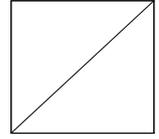


공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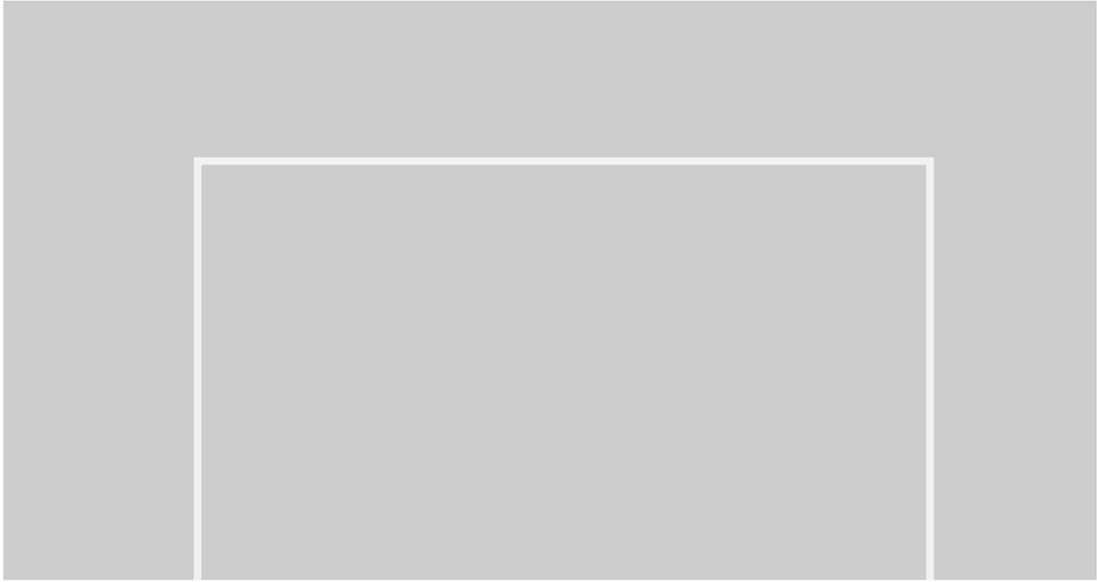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1. 12. 23. (제 30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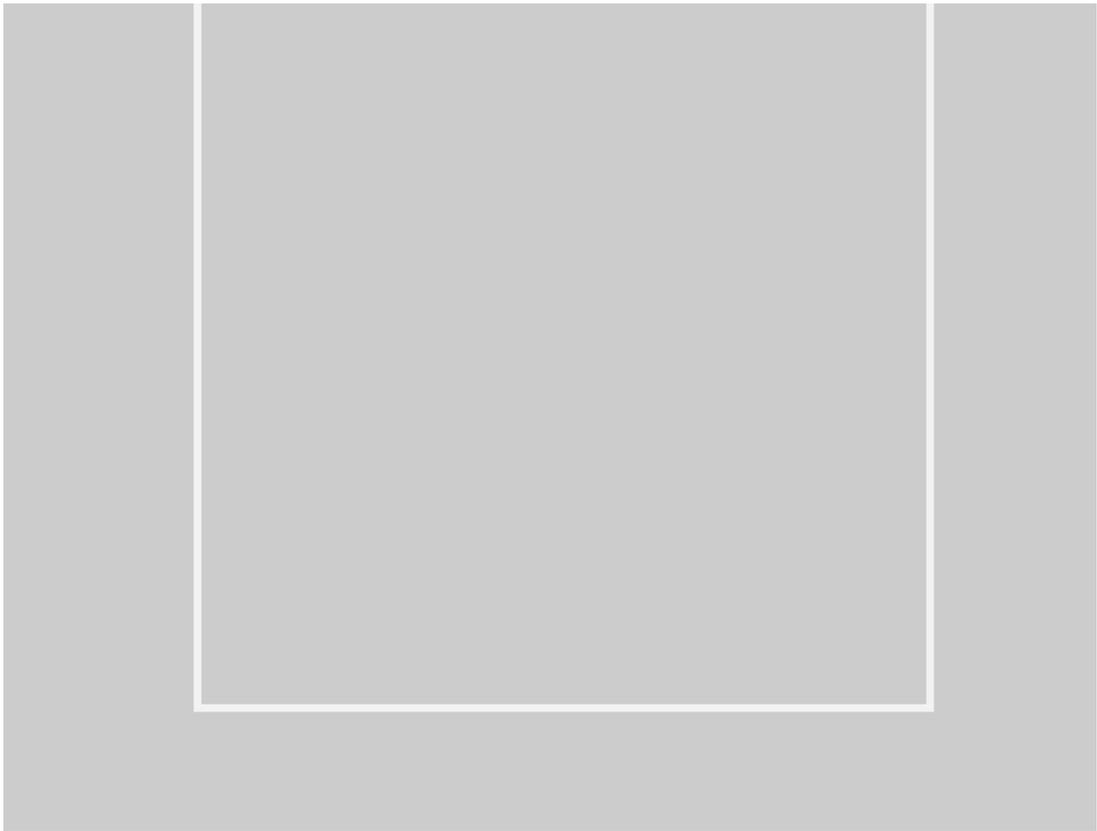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22 ~ 202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출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외 교 부 장 관 정의용 법 무 부 장 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 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환 경 부 장 관 한정애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관 세 청 장 임재현 특 허 청 장 김용래 17개 시·도지사
제출 연월일	2021. 12. 23.



요약



1. 의결 주문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22~‘26)」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 이유

- 동 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이 완료됨에 따라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22~‘26)」을 수립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의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개요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평가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22~‘26)」 수립 추진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확정(‘21.3월, 제29차 본회의)
 - 글로벌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와 현황을 진단
 - * 디지털 전환, 산업·문화·기술간 융·복합 가속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 각 부처와 지자체의 IP 정책과제 접수(‘21.8), 공청회(21.10, 세종·광주·울산 총 3회), 관계부처 협의(‘21.11), 전문가 사전검토(‘21.11, 분과별 전문위·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등을 거쳐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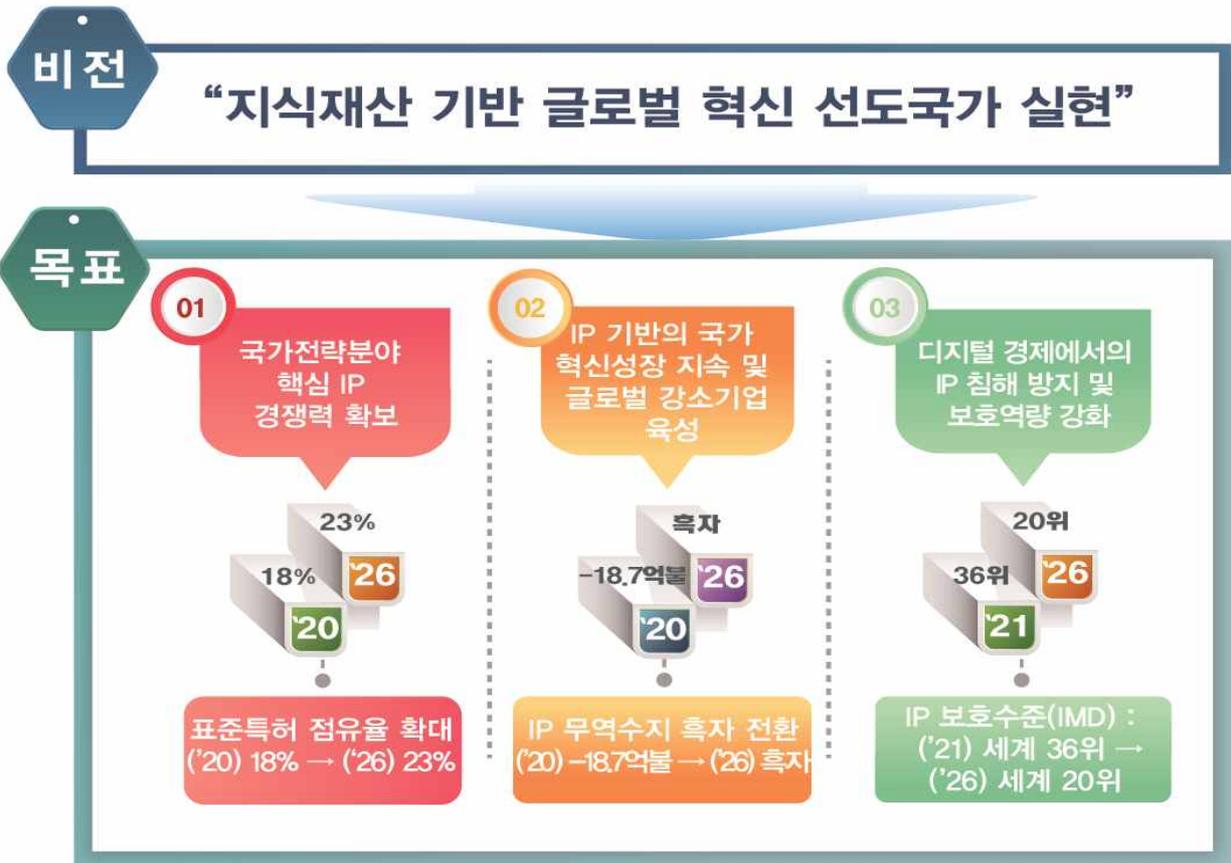
②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 산업재산권 상위 국가로 성장하였고, 저작권에서도 한류 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 등 글로벌 지위 향상
 - ※ 주요국 PCT 출원 순위('20): (1위)중국, (2위)미국, (3위)일본, (4위)한국, (5위)독일
 - ※ PCT 출원(건): ('15)14,626 → ('20)20,060, 표준특허 점유율(%): ('15)6.4 → ('20)18.0
- 혁신기업에 대한 IP금융투자펀드 등 지속 투자 확대 등을 통해 IP 금융시장의 양적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 ※ IP 금융시장 규모(억원): ('16) 5,774 → ('20) 20,640
- 기업의 IP보호 확대 및 디지털 보호 기반 조성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20.10),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임치 서비스 운영('20, 11,226건) 등
-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등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디지털 환경 불법복제물 유통 대응을 위한 저작권보호원 공공기관화 운영('17)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18.5) 등
- 초·중등 발명교육*, 대학 강좌 등 확대로 IP 교육 기반 구축**
 - *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약 45만명의 초·중·고 학생이 발명교육 참여
 - ** 'IP 교육 선도대학'을 지정(~20년, 총 27개), IP 정규교과목 개설 및 융합교육 운영

< 현황 진단 및 보완 필요사항 >

- ◇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IP를 확보하고, IP기반 창업 촉진, 한류 콘텐츠 확산 등을 위한 적극 대응 필요
- ◇ 산업기술·영업비밀의 국외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최근 디지털·언택트 환경 변화에 적합한 IP 보호체계 강화 필요
- ◇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성·업무역량을 보유한 IP 전문인력의 집중 육성이 요구되고,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 IP 국제협력 강화 필요

③ 비전 및 추진전략



□ (전략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 특히 빅데이터 분석* 및 DB 구축 등 정보 관리·활용 강화로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유망기술 탐색, 핵심 IP 확보전략 도출
 - * 특허패밀리수, 피인용수, 출원인 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기술의 경쟁력 도출
 - ※ 분석대상 유망기술에 대한 DB 구축 등 정보 관리·활용 강화('22~)
- BIG3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한 IP-R&D 전략지원 확대**
 - * (현재) 소·부장 중심 → (확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백신, 탄소중립 등
 - ** IP-R&D 사업 전략지원 과제(개): ('21) 500 → ('22) 600 → ('26) 800
- 각 부처 산하 공공 거래기관의 개별 거래시스템을 연계하여 협력형 IP 거래체계* 구축 및 IP거래·금융 종합포털 마련
 - * (예) IP마켓(www.ipmarket.or.kr)과 테크브리지(tb.kibo.or.kr)의 거래 연계
-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상표 보호*, 디지털 물품의 디자인 보호 대상 포함 및 유통 등 행위의 침해행위 규정** 마련 등 법제 정비
 - * 상표법 개정 / ** 디자인보호법 개정

□ (전략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 영업비밀 탈취 법인 가중 처벌, 침해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상당액 추징), 간접탈취 행위 제재 등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AI를 활용한 IP 침해물품 판별 시스템 및 장비 개발(~'23)
- 소·부·장 등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 특허 분석 등 분쟁위험 조기 진단* 및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사후 대응** 지원 확대
 - * 지원기업(개): ('22) 50(소·부장) → ('23~) 200(소·부장, BIG3 등)
 - ** 지원기업 및 예산(개/억원): ('21) 396/109 → ('22) 480/139

○ IP 관련 소송 관할집중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 (현행)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 민사소송 본안 → (개선방향)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침해금지 가처분 2심, 형사소송

□ (전략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17개 시·도의 'IP 창업존'을 통해 지역의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고도화하고 IP 권리화 지원

※ IP 창업존 수료자(명): ('20) 1,477 → ('26 목표) 2,380

○ 혁신기업에 대해 IP 가치평가와 연계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특허계정에서 IP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여 IP성과 확산

* 규모(억원): ('21) 11,635 → ('26 목표, 특허청) 18,700

○ IP 기반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공제의 자립화* 등 추진

* 가입자(건): ('20) 5,206 → ('26 목표) 27,000(부금액 8천억원)

○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IP 바우처 확대

※ IP 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해외 IP 출원(건): ('20) 1,421 → ('26 목표) 2,286

□ (전략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 확장현실(XR) 활용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22~'24) 및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착수

* 제작업체 지원(개): ('20) 37 → ('26 목표) 58 / ** ('22) 161억원

○ 데이터마이닝 저작권 제한과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데이터 마이닝 관련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신설

○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추진('21.5~), 정례 분석 회의 및 법·정책연구 등 공조체계 구축('21.11~'26.4)

- 침해 발생에서 대응조치까지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 * 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등 저작권 보호대응 종합시스템 구축('22), 빅데이터 기반 통계시스템 및 저작권 보호 업무포털 구축('23~'24)
-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차적 저작권* 양도 강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협의 구체화시 엄정 조치
 - * 원작에 기반을 둔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제작 권리
-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및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 권익보호를 위한 '창작자 표시 의무**' 신설 추진(저작권법 개정)
 - * 저작권 양도 이후라도 양수인에게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 실제 창작에 기여한 자(직원 등)의 성명 등을 표시할 의무

□ (전략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편성한 '발명교육 선도학교' 확대*
 - * 규모(개교): ('21) 고교 28 → ('26) 초·중·고교 84 이상
-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및 찾아가는 초·중·고 저작권 교육·운영**
 - * 연간 100개교 이상 운영 / ** 연간 6천회 이상 운영
- 권역별 IP 중점대학을 통한 대학 내 IP융합 전공과정 운영 확대*
 - * ('21) 3개(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 ('22) 4개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교육부)」과 협업·연계하여 지정 확대 추진
- AI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IP 교육을 제공하여 IP 창출·활용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육성('22~)
 - ※ 혁신성장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양성 사업('20~)
- WIPO 주관 정책대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IP 이슈 논의 및 규범 형성 주도 추진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인증 확대*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개): ('20) 263 → ('26 목표) 500

○ 지역의 IP 창출·활용 촉진 및 지역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운영 지속 추진

* 14개 시·도의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 스타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 지역 IP 창출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25개 RIPC 운영('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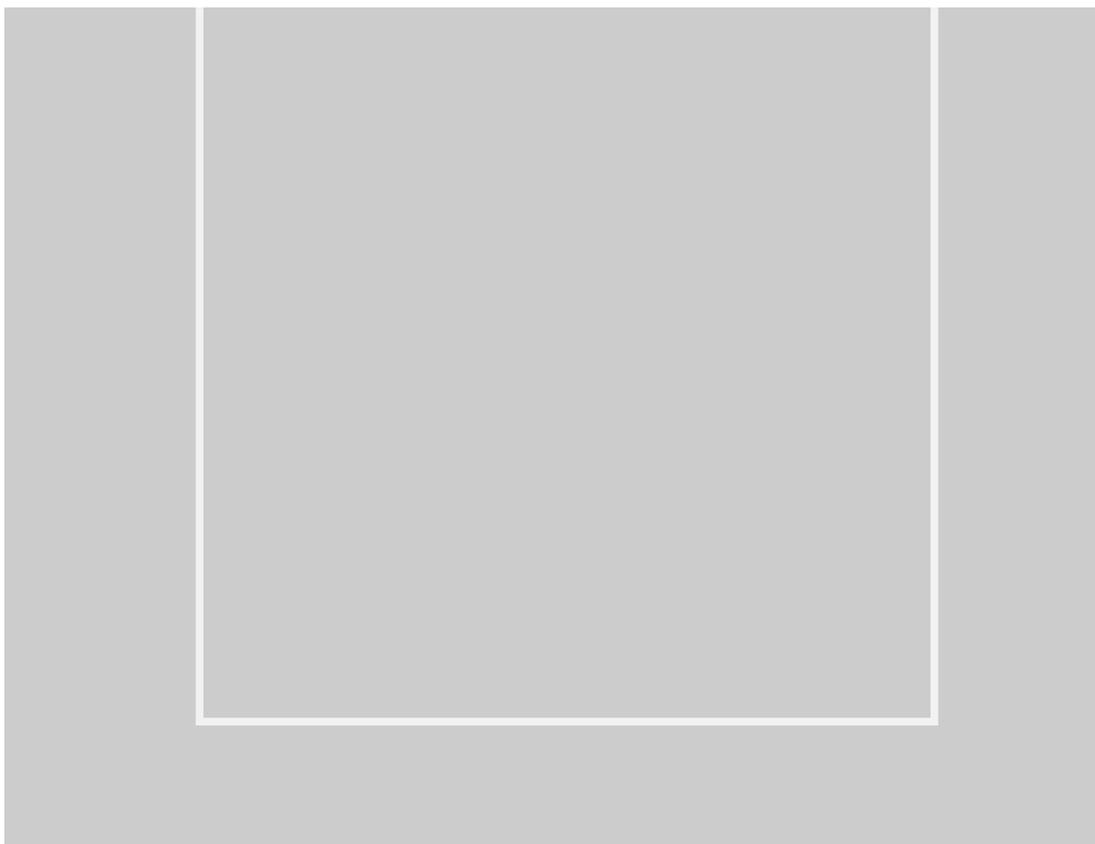
4. 향후 계획

○ 동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매년 3월)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등'에 반영(매년 3월)



별 지



별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22~2026)

2021. 12. 2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동향 분석	3
1. 글로벌 환경 변화	3
2. 국내·외 IP 관련 주요 동향	8
III. 그간의 성과 및 경쟁력 진단	11
1. 추진 성과	11
2. 현황 진단	13
3. 정책 추진방향	17
IV. 비전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18
[전략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	19
[전략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27
[전략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36
[전략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42
[전략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51
【붙임1】 성과지표 설명	63
【붙임2】 과제별 목록	65
【붙임3】 주요 법개정 사항	71

I . 추진 배경

-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은 최근 급격한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
 - 디지털 대전환, 국가간 기술분쟁 및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 기술의 신속한 확보·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전 세계적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및 기술블록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의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핵심 IP의 선점이 필수
- 국가 경제성장은 과거에는 제조업 기반 설비·건설 투자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IP의 역할 및 투자가 중요
 - 경제성장에 미치는 IP의 기여도가 커지며, 핵심기술 개발 및 IP에 대한 전략적 관리의 중요성 확대
 -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및 산업의 비대면화 확산에 따라 무형자산인 IP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

참고 IP의 경제적 가치 확대



- 전 세계 IP 사용료 시장은 약 490조원('20, 세계은행) 규모로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약 520조원, '20 WSTS)와 유사
- S&P500 기업 무형자산 비중(%): ('75) 17 → ('95) 68 → ('20) 90 (美 오션토모, '20)

- IP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인하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
 -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진국가 도약* 및 고품질 IP 확보 등 질적 성장 전환** 을 목표로 추진·창출된 기존 성과를 토대로,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 디지털 전환, 데이터 경제 도래,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이 긴급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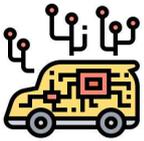
'지식재산'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규정

- 인간의 창조적 활동·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지식재산권: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 (분류) 지식재산권은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①산업재산권, ②저작권, ③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

단계	내용	예시	
산업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영역에서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 전기차 모터 등 "핵심기술" ■ 실용신안권: 전기차 주변 "개량기술" ■ 상표권: 전기차 "모델명" ■ 디자인권: 전기차 "외관" 	
저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격권: 음악의 "작곡자의 성명표시" ■ 저작재산권: 음악의 "공연, 방송, 배포" ■ 저작권접권: 음악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 	
新지식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 전통지식: "과학 지식", "생태학적 지식" ■ 유전자원: "신품종", "농림자원" 	

Ⅱ.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동향 분석

1 글로벌 환경 변화

◇ 디지털전환·데이터경제 시대 도래와 산업·문화·기술간 융·복합 가속화

- 핵심기술(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이 견인하는 융·복합 산업이 출현하고,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미국, EU,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에 디지털기술 활용을 확대하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전략적 접근 강화
 -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로 온라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보통신기술(ICT) 투자도 확대 경향

참고 융·복합 산업의 확대 및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 (美) Big data R&D 전략계획 마련('16), (日)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 및 디지털청 신설('21), (中) '산업 빅데이터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20)
- 글로벌 기업 대상 코로나 이후 IT 투자 조사(하나금융연구소, '20): 당초 계획보다 상향(36.2%), 현상 유지(22.3%)

-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융·복합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 자국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창출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핵심기술 IP 창출체계 마련 및 관련 표준특허 확보 경쟁 치열
 - 디지털 전환 환경변화 속에서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 IP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한 법제 정비 및 제도 개선 노력 중
 - *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AI 발명자의 적격성 및 귀속, AI에 의한 IP 침해와 예외 등
 - ICT 융합에 기반한 메타버스 등 신산업·기술* 발전,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련한 논의** 확대
 - *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 지능형 신약개발 기술, 지능형 로봇 등
 - ** 실감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 필요성 등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산업기술 안보동맹 가속화

- 미국-중국간 기술패권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인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대와 국가안보 중심의 경제질서 변화 추세
 -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기술안보 동맹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블록화 및 디커플링 가속화
 - 중국은 '기술굴기'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에서의 패권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국가정책 수립

예시 美·中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강화 조치



- (美) 미국의 초당적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통과('21.6), 미국 주도 글로벌 안보 및 對중국 견제 협의체 강화 등
- (中) '제조 2025('15.5)',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20.9) 등

- 기술패권경쟁 과정에서 IP 이슈가 크게 부각되며, 세계 각 국가들은 IP 보호체계 마련에 노력
 -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고('20.1),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근거한 중국의 IP 집행현황을 조사('20.4)
 -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계획을 발표하며 IP 집행강화 조치
 - ※ 'IP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2020~2021)' 제정('20.4)
 - 또한, 여러 국가들은 빈번해진 IP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IP 보호제도 및 정책 시스템 정비
 -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USMCA* 및 CPTPP** 등 경제블록화 동맹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IP 보호체계 구축***
 -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 *** 특허존속기간·자료보호기간 연장,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책임 강화 등
 - 유럽은 안정적·효율적 역내시장 IP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IP 서비스 강화 등 국제협력 기반 보호체계 마련
 - ※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전략계획 2025' 발표('20.7) 등

◇ 글로벌 어젠다 대응 국제협력과 콘텐츠·신지식재산 등 중요성 부상

- 세계 각국은 코로나 팬데믹 등 글로벌 의제 대응을 위해 IP 관련 국제협력·공조를 강화하고, 핵심 IP 선점 등 정책적 노력 확대
 - 글로벌 차원의 탄소저감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실증기술* 확충 등을 통한 핵심 IP 확보 및 국제 공조 촉진
 - *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운송수단 도입, 에너지 효율 제고, 기후 친화적 생산 시스템 등
 - 신흥·개도국은 IP 심사 협력체계 구축 등 IP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사업 지원 등 국가간 협력 희망
- 5G의 대중화, 증강·가상현실(VR·AR) 등 영상기술 발전, 플랫폼 경제의 확산 등으로 콘텐츠 생산·소비 생태계의 큰 변화 전망
 - 콘텐츠 이용자들이 기존 콘텐츠를 가공·재구성하여 유통하고, AI 등 ICT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상호작용 확대
 - 플랫폼 경제에서 수요 독점으로 인한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권익의 균형 문제 발생 등 콘텐츠 생태계 변화
 - ※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간 IP 소유권 및 수익 분배 등 이슈 발생
- 신지식재산권(반도체 IP, 생물자원 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 반도체 설계 등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관련 IP의 유통 및 활용, 국제표준화 주도* 등 필요성 증대
 - * 시스템 통합·검증·설계 중심으로 美 전기전자학회(IEEE) 등 표준화 기구가 주도
 -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간 생물다양성협약, 생물자원 활용 이익 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규범 협력·대응 필요

참고2

주요국 IP 정책 동향

□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계획 수립 및 핵심 IP 확보에 총력

구 분	주 요 내 용
 <p>미 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산업 리더십 유지를 위한 산업전략, 저작권 관련 기준 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양자정보과학(QIS), 첨단제조업, 5G, 바이오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방안」 제시(‘20.8) ○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업 환경에 부합하여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등 기준을 마련한 「2021년 디지털저작권법」 초안 발표(‘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면책,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 관리정보 등 ◆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강력한 IP 보호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 IP 규범 형성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주도하고, 주요 협정에 대한 IP 분야 대응 강화 ○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기업거래 차단목록 등재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등 거래 제한 ○ 자국의 혁신 리더십 유지 및 중국의 추월 저지를 위해 국가 우선 과제로 IP 인식 및 정책·제도 마련 강조(NSCAI,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분야에서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을 통한 자국기술 보호
 <p>E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 환경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산업의 불공정 해소 문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AI에 관한 통일규칙(인공지능법)」 제정(‘2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시스템의 분류, AI 시스템 공급자·사용자·수입업자, 유통업자의 의무 등 ○ 새로운 데이터 경제시대를 이끌기 위한 데이터의 접근, 사용 기준, 활성화 등을 위한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법」 제안(‘20.11) ◆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효율적 IP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집약산업 강화 및 차세대 기술(AI, 빅데이터 등) 발전을 위한 「IP 실행계획」 발표(‘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보호의 향상, IP 공유와 이용 촉진, 복제·위조 상품 대응 등 ○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전략계획 2025」을 통해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의 효율적 IP시스템 구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역내시장 IP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 등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 등 ○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 및 「디지털 시장법」 등 제안(‘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엔진·소셜네트워크·온라인중개서비스 등 핵심 플랫폼 사업자 대상 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가치사슬의 확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ICT가 결합되어 제조업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제조업 생태계 네트워크화를 위한 「산업인터넷 발전가속화를 위한 통지」 발표('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인터넷을 정보기술과 제조업이 융합하여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는 주요 동력으로 보고, 망 업그레이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 추진 ○ 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중국이 개발한 기술의 국제표준 달성을 위한 「중국표준2035」 발표 예정 ◆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및 핵심 IP 선점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혁신연구 성과 및 IP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혁신 연구성과 보호를 위해 IP 보호에 대한 실천력을 강조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법행위 적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구축, 지역의 IP 펀드 지원 등 제안 ○ 혁신기술 IP 선점을 위해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발표('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ICT 제품의 공급망 유지, 데이터 도용 방지, 데이터 무단 수집 및 감시, 주권 보호 등 제안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활용 콘텐츠 제작 전략, 디지털 환경 대응 전략 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문화를 사업화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창작자를 지원하는 「컬처팬 전략」 발표('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제 이벤트가 집중하는 2025년까지 일본에 대한 국제적 주목을 높이기 위해 IP 활용을 뒷받침하는 대책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0」('20.6)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교육 지원,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규칙 정비,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콘텐츠 창작 생태계 구축 등 ○ 디지털플랫폼에서의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안」 발표('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계약조건 공개 및 변경시 사전 통지 의무화,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자기평가 보고서를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매해 제출 등 ◆ ‘일본 IP 추진계획 2021’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시행된 IP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IP 추진계획 2021’ 발표('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그린 경쟁에서 이기는 무형자산 강화 전략 등 제안 ◆ 신산업의 경제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선도기술 확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지적 자본주의 경제 전환 및 기술진전에 대응하여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산업기술비전 2020」 발표('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형성, 인재 유동화 및 고급인재 유치, 제조업·소재·부품 분야의 글로벌 니치분야 선점, 핵심 분야에 대한 R&D 투자 중점화 등 * 사이버 공간과 현실 사회가 고도로 융합된 초스마트 사회 실현계획

2 국내·외 IP 관련 주요 동향

- (PCT 출원) 전 세계 국제특허(PCT) 출원은 '20년 기준, 약 27.6만 건 수준으로 '19년(약 26.5만건) 대비 약 4.0% 증가
 - 세계 경제성장에 따라 '10년 이후 PCT 출원 건수는 지속 증가해 왔으며, 중국(6.9만건), 미국(5.9만건), 일본(5.1만건) 순으로 높음
 -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20년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기록
 - ※ '19년 대비 증가율(%): 중국(16.1), 한국(5.2), 미국(3.0), 독일(-3.7), 일본(-4.1) (WIPO, '20)
- (표준특허)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판단지표 중 하나인 표준특허(SEP) 건수*는 '20년 기준, 약 9.7만건 수준
 - * 5대 국제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美전기전자학회(IEE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선언 표준특허
 - 글로벌 국가별로는 미국(2.5만건), 중국(2.2만건), 한국(1.7만건), 일본(1.1만건) 순서로 높음
 - 우리나라의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은 '15년 6.4%에서 '20년 18.0%로 약 3배 증가하며 세계 3위 달성
 - ※ '19년 대비 증가율(%): 중국(16.1), 한국(5.2), 미국(3.0), 독일(-3.7), 일본(-4.1)

< PCT 출원 >				< 표준특허 >			
국가명	2016년	2018년	2020년	국가명	2016년	2018년	2020년
중국	43,091	53,345	68,720	미국	11,963	15,522	24,661
미국	56,591	56,142	59,230	중국	3,656	8,466	21,805
일본	45,209	49,702	50,520	한국	3,735	8,881	17,492
한국	15,555	17,014	20,060	일본	3,890	4,770	10,738
독일	18,307	19,883	18,643	독일	1,081	1,197	1,392

※ 출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WIPO, '20) ※ 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21)

□ (기술분야별) 최근 10년간('10~'19년) 우리나라의 미국 등록특허는 총 18.8만건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6.2%) 수준

※ '2020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KISTEP, '20.12)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분야 중 대부분의 경우, 등록특허 점유율도 상승 추세

< 최근 10년간('10~'19년) 우리나라의 미국 등록특허 점유율(%) >

기술 분야	점유율(국가 순위)		기술 분야	점유율(국가 순위)	
	'10년	'19년		'10년	'19년
AI	2.34 (4)	4.61 (3)	자율주행차	5.18 (4)	6.88 (3)
빅데이터	2.69 (4)	4.68 (3)	3D 프린팅	2.56 (4)	4.33 (4)
클라우드	2.97 (4)	6.71 (3)	바이오마커	3.19 (3)	2.72 (6)
사물인터넷	2.67 (4)	4.34 (4)	디지털 헬스케어	1.26 (8)	3.99 (4)
지능형 로봇	1.35 (6)	4.01 (5)	전체	5.67 (3)	6.41 (3)

○ 반면, 특허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대표적 지표인 특허 당 피인용수는 약 2.8건으로 세계 20위 수준

-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분야의 특허 당 피인용수는 세계 20~30위권 수준으로, 등록특허 수(3~5위) 대비 순위 저조

< 최근 10년간('10~'19년) 우리나라의 미국 등록특허 당 피인용 수 >

기술 분야	등록특허 수(국가 순위)	특허 당 피인용수(국가 순위)
AI	5,233 (3)	1.85 (28)
빅데이터	15,642 (3)	1.82 (32)
클라우드	16,176 (3)	1.61 (32)
사물인터넷	12,874 (4)	1.57 (31)
지능형 로봇	762 (4)	2.11 (19)
자율주행차	2,825 (3)	1.38 (20)
3D 프린팅	8,456 (4)	0.89 (31)
바이오마커	411 (5)	0.84 (24)
디지털 헬스케어	2,124 (5)	1.25 (30)
전체	188,160 (3)	2.83 (20)

- (IP 무역수지) '20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년 대비 적자가 13.4억달러 증가하며 약 18.7억달러 적자 기록
- (유형별) 산업재산권은 35.3억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은 18.9억달러 흑자**를 나타냄
 - * ('18) -15.2 → ('19) -29.8 → ('20) -35.3 / ** ('18) 14.7 → ('19) 27.7 → ('20) 18.9
 -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권'의 적자가 가장 크며(-23.8억달러), '상표·프랜차이즈권'(-11.5억달러), '디자인권'(0억달러) 순으로 적자 축소
 - (저작권) '연구개발 및 SW저작권'(17.3억달러)과 '문화예술저작권'(1.6억달러) 모두 흑자 기록
- (기업별) 대기업은 10.5억달러 흑자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28.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대기업 대비 어려운 상황

< IP 무역수지(수출/수입, 억달러) >				< IP 무역수지(산업재산권/저작권, 억달러) >			
년도	무역수지	수출	수입	년도	무역수지	산업재산권	저작권
2018년	-6.1	150.2	156.3	2018년	-6.1	-15.2	14.7
2019년	-5.2	154.1	159.3	2019년	-5.2	-29.8	27.7
2020년	-18.7	155.3	174.0	2020년	-18.7	-35.3	18.9

※ 출처: 2020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한국은행, '21.3)

- ◇ 우리나라는 국제특허출원 및 표준특허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세계 상위권을 유지 중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IP 확보에 노력
 - 다만, 주요 기술분야의 IP 수준은 양적으로는 세계 상위권이나, 질적인 수준(특허 당 피인용수)은 개선 필요
- ◇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미국 등의 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 상, 지속 적자 상황
 - 다만, 저작권 수지는 한류 등 영향으로 흑자 유지 지속

Ⅲ. 그간의 성과 및 경쟁력 진단

1. 추진 성과

- (IP 창출·활용) 산업재산권 상위 국가로 성장하였고, 저작권에서도 한류 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 등 글로벌 지위 향상
 -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수요 기반 IP 확보에 노력하여 IP의 '양' 뿐만 아니라 '질' 중심으로의 성과 확대 추세
 - ※ 주요국 PCT 출원 순위('20): (1위)중국, (2위)미국, (3위)일본, (4위)한국, (5위)독일
 - ※ PCT 출원(건): ('15)14,626 → ('19)20,060, 표준특허 점유율(%): ('15)6.4 → ('20)18.0
 - 스타트업 대상 특허 바우처*, IP 기반 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IP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정책 지원체계 마련
 - * 스타트업 269개 기업에 대해 309건의 특허 바우처 발급('20)
 - ** IP 기반 창업 촉진사업(219억원, '19~'20), 특허 기반 창업아이템 1,350건 도출 지원('18.4),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특허 출원 및 창업 지원(창업 성공률 28%)
 - 혁신기업에 대한 IP금융투자펀드 등 지속 투자 확대 등을 통해 IP 금융시장*의 양적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 * IP 금융시장 규모(억원): ('16) 5,774 → ('20) 20,640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실적(건/억원): ('16) 92 / 137 → ('19) 136 / 243
 - 또한, IP 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IP의 가치평가 개선을 위한 평가기관 확대**,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화 연계 금융 지원
 - * 국책은행 → 5대 시중은행·지방은행(~'20) / ** ('17) 15개 → ('19) 20개
 - 한류 붐 조성 등 저작권 기반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 유도
 - 음악, 영화 등 저작권 기반으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콘텐츠 산업은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 추세
 - ※ 콘텐츠 산업 수출액(억달러): ('15) 56.6 → ('20) 108.3

- 편리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저작권의 권리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온라인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체결 지원
 - *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약 4,113만건(누적) 구축('20)

□ (IP 보호) 기업의 글로벌 IP 보호 확대 및 디지털 보호 기반 조성

- 국가 핵심기술 보호 및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적 조치 기반 마련
 -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20.10),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임치 서비스 운영('20, 11,226건) 등
- IP 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기업 경영안정 기반 제공을 위해 특허공제** 시행
 - * 지식재산공제 가입자에 납입 부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제 대출
 - ** 특허공제 가입 기업(개): ('19) 1,409 → ('20) 5,122 (약 3.6배 증가)
 - 특허공제 부금 규모(억원): ('19) 26.4 → ('20) 290.6 (약 11배 증가)
-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등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디지털 환경 불법복제물 유통 대응을 위한 저작권보호원 공공기관화 운영('17)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18.5) 등

□ (IP 기반) 초·중등 발명교육, 대학 강좌 등 확대로 IP 교육기반 구축

- 전국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창의·융합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및 발명문화 확산에 기여
 - *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약 45만명의 초·중·고 학생이 발명교육 참여
- 「지식재산 일반」 교과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고('21, 28개교), 일반 정규 교과목(연간 2단위 이상) 채택 학교 확대*
 - * ('19) 46개교 → ('20) 112개교(일반교 97, 특목교 4, 발명특성화교 6, 일반특성화교 5)
- 전국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IP 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IP 정규 교과목 개설 및 융합교육 운영
 - * '12년부터 매년 3~4개교씩 선정하여 '20년까지 (누적) 총 27개 지원

2. 현황 진단

- (IP 창출·활용)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IP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IP 기반 창업 촉진, 한류 콘텐츠 확산 등을 위한 적극 대응 필요
 -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등 대응을 위해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선점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필요
 - 정부 R&D투자 확대에 비례하여 양질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R&D 과정에서 특허동향 조사 등 적극적인 IP 활용 필요
 - AI, 메타버스 등 융·복합 신산업 확산 및 데이터 경제 전환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제도 정비 요구
 - IP 기반 혁신형 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원활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글로벌 IP 보호환경 개선, 한류 확산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 다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신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
 - 해외에서의 IP 분쟁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이 위축되고, 현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적절한 대응에 한계
- ※ IP 분쟁으로 인한 해외 사업 축소·철수 비율(%): ('14) 4.5 → ('18) 23.6
- IP 거래 활성화 및 투·융자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 등의 연구성과가 고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화 체계 필요
 - 국내 IP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에 비해 IP 투자역량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IP 투자규모 증가는 미흡
- ※ IP 직접투자 실적은 ('15) 1,876억원 → ('20) 2,62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금융시장 대비 비중은 ('18) 24.6% → ('20) 12.7%로 하락(특허청, '21.2)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제고·확산 필요
- ※ 국가 R&D 성과의 기술이전 건수는 ('14) 21,205건 → ('18) 26,171건으로 증가 추세이나, 건당 기술료 수입은 ('14) 9.1억원 → ('18) 9억원으로 정체

- 양질의 한류 콘텐츠 제작이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법제 정비 필요
 - AR·VR,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시장 확대, 비대면 문화 일상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산 등 대외환경이 급격히 변화
 - 차세대 K-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금융, 해외 진출 등 전주기 통합 지원 필요
 - 콘텐츠 활용·확산을 위한 플랫폼-제작사 간 불공정 개선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서비스) 산업 활성화 필요

- (IP 보호) 산업기술·영업비밀의 국외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최근 디지털·언택트 환경 변화에 적합한 IP 보호체계 강화 필요
 - 국내기업의 기술력 향상, 연구인력 이직 등으로 핵심기술 유출이 급증하여 기업 IP 분쟁을 최소화하는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 국제 IP 보호 순위 하락(IMD): ('15) 27위 → ('21) 36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언택트 기반 경제활동의 가속화로 다양화·지능화되는 IP 침해유형을 감안한 IP 보호기반 마련 필요
 - ※ 알리바바(中) 대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건수(특허청): ('15) 18,890 → ('19) 258,343

- (IP 기반)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성·업무역량을 보유한 IP 전문 인력의 집중 양성이 요구되고, IP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필요
 - 역량있는 IP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IP 교육 수혜비율*이 낮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IP 실무인력, 국제표준 전문가 등 육성도 부족
 - * 연간 초·중·고교 학생 수의 6.2%('19, 34.4만명) 수준
 - 글로벌 IP 이슈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의 회의체 참여, 공동포럼 개최 등 적극적 국제공조 기반 조성 필요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상표·디자인 분야 선진 5개국(TM5, ID5) 등

참고3

현장의 목소리 (대국민 보고회, 공청회 등)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 추진과제: 전략-16대 추진과제)
<p>IP 창출·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핵심기술 분야 IP 확보방안 마련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분석체계 마련 필요(1-1)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는 R&D 및 IP 창출체계 필요(1-1) ▶ 시장 및 지역 수요 기반 통합적 IP 활용·금융 시장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가치평가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중요(3-2) ○ 민간 주도 IP 거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기업 연계 마련 필요(1-2) ▶ IP-R&D 관리 체계 개선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기획부터 IP 표준화를 고려하고, 기술이전과 활성화 유도(1-1) ○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제고를 위한 IP 관리체계 개선 필요(1-2, 3-1)
<p>IP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침해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소송제도 효율성 도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대비 IP 보호 이슈를 찾아 선제적 대응 필요(2-1), (2-2) ○ IP 침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제도 고도화 필요(2-3) ▶ 국가별·IP영역별 유형을 고려한 차별화된 보호 전략과 공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공조를 통한 분쟁 해결시 산업재산권·저작권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식의 차별화 필요(5-2) ○ 산업기술·영업비밀 탈취 예방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필요(2-2), (4-2)
<p>IP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인력양성 지원의 체계화 및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IP 지원사업의 전국적 확산 및 강화 필요(5-1) ○ 신기술(AI 등)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무역량 교육 강화 중요(5-1) ▶ IP에 인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및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IP 데이터 활용 노력 필요(5-4)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대국민 전달력 제고 등 소통에 노력(5-4)
<p>IP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법제 정비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요구되는 선제적 법률 개선 및 정비 필요(1-3) ○ 융·복합 환경에 대응하는 개별법률 간 연계성·통합성 확보 필요(1-3)

참고4

제3차 기본계획 수립경과 및 향후 일정

- (수립경과) '21.12월 기본계획 수립·확정을 목표로 '21.1월부터 추진
 - IP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이슈 조사·분석('21.1~2월)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주요국가의 IP 관련 정책 분석
 -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 분석,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동향과 이슈 등 분석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확정('21.3월, 제29차 본회의)
 -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제시
 - IP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진과제 제안('21.5~8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운영(총 6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등 분과별 의견 수렴
 - 각 부처·지자체*의 향후 5년간('22~'26) IP 정책과제 접수('21.8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24개 부처(기관) 및 17개 시·도
 - 대국민 의견수렴 지역별(세종·광주·울산, 총 3회) 공청회 개최('21.10월)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협의('21.11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21.11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사전 검토('21.11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21.12.3)
 - 제3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21.12.23)
- (향후일정) 향후 5년간('22~'26)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평가
 -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등'에 반영

3. 정책 추진방향

국내·외 환경변화

- ◆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및 융·복합 가속화
-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산업기술 안보 동맹 가속화
- ◆ 글로벌 IP 의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그간의 성과 및 한계

IP 창출

- ◆ '양'에서 '질' 중심의 IP 성과 확대
- ◆ 콘텐츠 산업 성장으로 저작권 수출 확대
- ◇ 전략분야 IP 선점 및 경쟁우위 확보 필요
- ◇ OTT 서비스 확산 등 환경변화 대응 필요

IP 활용

- ◆ IP 기반 창업기업 지원체계 마련
- ◆ IP 금융 시장의 양적 확대 및 기반 조성
- ◇ 혁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필요
- ◇ IP 투자 증가 미흡 및 사업화 저조

IP 보호

- ◆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
- ◆ IP 분쟁으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
- ◇ 핵심기술 유출 예방·대응 고도화 필요
- ◇ 디지털·언택트 환경 대응 보호 강화 필요

IP 기반

- ◆ 초·중·고, 대학 대상 IP 교육기반 구축
- ◆ IP 국제협력 중요성 인식 및 활성화
- ◇ 대상별 차별화된 IP 교육 전문성 미흡
- ◇ 적극적 국제협력으로 영향력 확대 필요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 1 디지털 전환 등 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IP 창출·활용 및 법·제도 정비
- 2 핵심 IP 보호를 위한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및 분쟁해결 고도화
- 3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IP 기반 혁신창업·성장·글로벌 진출 지원
- 4 신한류 확산을 위한 차세대·고품질 K-콘텐츠 창출·활용 및 기반 조성
- 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글로벌 협력 강화

IV. 비전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



- 5대 추진전략**
- 0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 0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 0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0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 0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 16대 추진과제**
1.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창출
 2. IP 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제도 정비
 1. 국가 핵심기술의 전략적 IP 보호 강화
 2. 국내·외 IP 침해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
 3. IP 분쟁 해결 체계 고도화
 1. IP 기반 혁신형 창업 촉진
 2. 중소·벤처기업의 IP 금융지원 확대
 3. 중소·벤처기업의 IP기반 글로벌 진출 촉진
 1. 차세대·고품질 K-콘텐츠 창출·활용 지원
 2. K-콘텐츠 보호 체계 강화
 3. K-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1. IP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2. 글로벌 IP 협력 이슈 대응
 3. 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4. IP 가치 확산 및 지역 IP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전략 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현황 및 추진과제

- (현황) 디지털 대전환, 데이터경제 시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핵심 IP 확보·활용과 선제적 법·제도 정비 필요성 대두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IP 분석 등을 통해 핵심(표준) IP를 선점하여 글로벌 주도권 확보 필요
 - IP 성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IP 거래,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IP 이슈 해결을 위한 제반 환경 구축 필요
- (한계) 핵심 IP 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 법·제도 정비 등 시급
 - 핵심 IP를 효과적으로 선점·활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미흡하고, 메타버스 등 신산업 확산에 걸맞은 제도 정비는 뒤쳐진 상황

환경분석	추진과제
❖ 핵심 IP 확보 전략 및 법제 정비 시급 ✓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확보전략 미흡 ✓ IP 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조치 미흡 ✓ 메타버스 등 신기술 관련 법제 정비 필요	❖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및 제반 환경 조성 ✓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표준) IP 선점 ✓ 핵심 IP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제 정비

추진방향 및 목표

- ◆ 국가 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경쟁력 확보 및 선제적 법제 정비
 - ⇒ 고품질 핵심 IP를 선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디지털 신기술 등 활용 극대화를 위해 선제적 제도 기반 조성

- ▶ (목표1) 국가전략산업 분야 특허당 피인용수(건): ('19) 4.5 → ('26) 6.0
- ▶ (목표2)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억원): ('19) 2,273 → ('26) 4,430
- ▶ (목표3) IP 관련 법제 정비(건): ('20) 14 → ('26) 20

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술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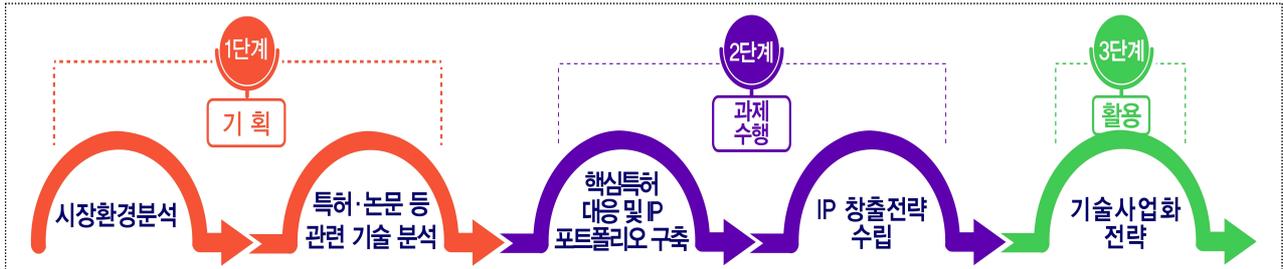
-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DB 구축 등 정보 관리·활용 강화로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유망기술 탐색, 핵심 IP 확보전략 도출
 - * 특허패밀리수, 피인용수, 출원인 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기술의 경쟁력 도출
- 부처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선정된 특허분석 대상·범위*(‘20, 5개, ‘21, 5개)의 유망기술에 대한 DB 구축 등 정보 관리·활용 강화(‘22~)
 - * AI,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IoT, 드론 등 5개 분야(‘20) / 5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화이트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철강·시멘트 산업공정 고도화 등 5개 분야(‘21)
- 기술 융·복합 등에 따른 사회현안 이슈 기술(양자컴퓨터 등)을 발굴 후, 특허출원현황 등 분석을 실시하여 기술적 해결방안 제시
 - 전 산업의 융·복합 가속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산업-특허 동향 분석 등 특허심사의 산업·기술 전문성 강화 지속 추진
- ※ (‘20) 시각인공지능·인공장기 등 16개 분야, (‘21) 가상융합반도체 장비 등 15개 분야

② IP 분석 기반의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BIG3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한 IP-R&D 전략지원 확대**
 - * (현재) 소부장 중심 → (확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백신, 탄소중립 등
 - ** IP-R&D 사업(특허청) 전략지원 과제(개): (‘21) 500 → (‘22) 600 → (‘26) 800
-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R&D 과제의 경우, 부처별 R&D 규정에 IP 대응전략의 수립 등 IP-R&D 제도화* 확산
 - * (현재) 산업부(‘15) → (확대) 과기정통부, 방사청, 중기부, 복지부, 국토부 등(‘22~)
- 특허 분석결과가 R&D 과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전문가의 R&D 기획·투자심의* 참여 활성화
 - * R&D 부처·전담기관의 과제기획위원회 등

- 대학·출연연·공공연 대상으로 R&D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현재 IP 분석, 신규 IP 창출 등 IP 중심의 R&D 전략 지원(22~)

< R&D 전 단계 IP 전략 프로세스 >



3 핵심 IP 창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강화

- 유망 기술·산업별 IP 정보 등 IP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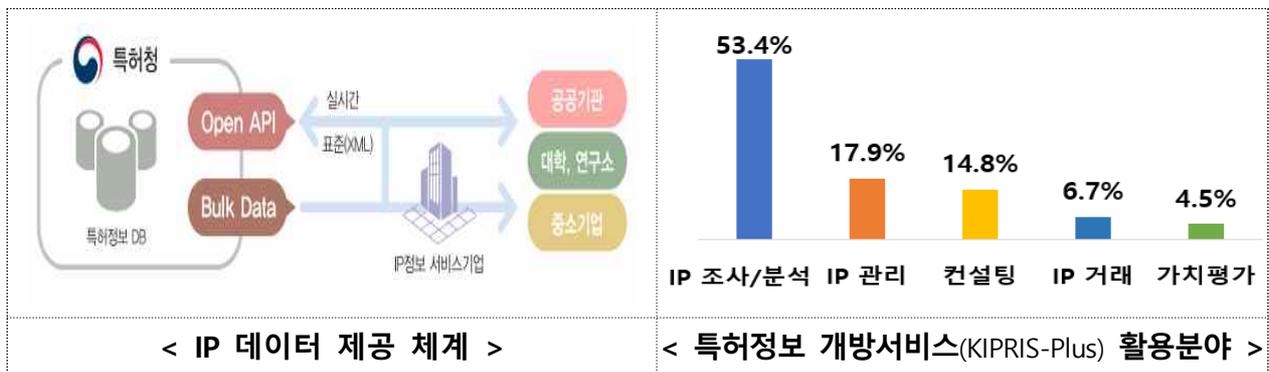
-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미래 융·복합 유망기술, 주요 출원인, 발명자 등 정보 관리·활용 체계* 구축

* 유망기술 DB 구축 및 주요 특허기술 보유 기관·인력 풀 구축·관리 등

※ 구축된 특허 빅데이터 중 공개 가능 정보는 AI 학습데이터로 민간 개방

- IP 심사과정의 참조·검색문헌까지 포함하여 DB를 확대하고*, 산업별 IP 데이터를 신속하게 산출·분석할 수 있는 체계 구축(22~)

* (현재) IP 활용(조사·분석) 정보 제공 → (확대) IP 가치평가(인용) 정보 포함



- 핵심기술 보유 스타트업에 해외 패밀리* 정보, 법적 상태(등록·무효 등), 권리 변동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제공(22~)

* 특정 특허를 국내 및 여러 국가에 출원시 원래 출원 특허와 관련된 모든 특허

- 해외 특허정보 활용을 위해 최신 기술·산업 트렌드 분석을 위한 맥락정보* 중심의 IP 데이터 구축·보급 추진('22~)
 - * AI기반 문자인식 기술 활용,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 DB화
- 주력산업·신산업에 빅데이터, AI 등 新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업종별 「산업데이터플랫폼*」 구축 확대**
 - * 개발·생산·유통 등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수집·분석·저장 시스템
 - ** ('20) 전기차, 신소재, 웨어러블 등 5개 분야 → ('21) 웰케어, 유통, 시험인증 3개 전략분야 추가(총 8개 분야) → ('22~) 8개 주력분야 플랫폼 구축 및 활용

4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R&D-표준-특허 연계

- 표준특허 확보 및 국제표준화 역량 제고를 위해 6세대 이동통신(6G), 개방형무선접속망(Open RAN) 등 분야에서 R&D-표준-특허 연계
 - 표준·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망기술을 R&D 기획에 반영하고, 연구수행 단계에서도 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전략지원* 추진
 - * (예) R&D 관련 특허, 표준안 분석을 통해 특허출원 대응 등 전략 지원
 - 대규모 R&D가 필요한 분야나 탄소중립 등 사회적 이슈 분야를 선정하여 표준선행기술조사*를 실시
 - * 표준특허성 여부 판단을 위해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사전조사
 - 표준연계가 필요한 R&D 과제에 대해서는 표준전략연구를 통해 표준화 방안을 지원
- ※ 표준화 선행기술조사(건): ('20) 55 → ('26 목표) 100

① 공공 IP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확대

- 각 부처 산하 공공 거래기관의 개별 거래시스템을 연계하여 협력형 IP 거래체계* 구축 및 IP거래·금융 종합포털** 마련

* (예) IP마켓(국가IP거래 플랫폼(발명진흥회), www.ipmarket.or.kr)과 테크브릿지(온라인기술유통 플랫폼(기술보증기금), <https://tb.kibo.or.kr>)의 거래 연계

** (기존 IP마켓) IP거래 정보 → (개선) IP거래+IP금융, IP가치평가, 아이디어거래 정보

- 지식재산거래소의 IP 거래 전 과정을 민간 거래기관과 진행하여 거래소의 경험·노하우, 브랜드 등을 참여 민간 거래기관과 공유

※ 민간거래기관 육성(社): ('20) 6 → ('22) 18 → ('25) 36

- 중소기업 수요 기반의 공공 IP 기술거래 플랫폼("테크브릿지")을 AI·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수요-공급 IP 매칭 시스템으로 개선('22~)

* 연구소·대학 등 공공부문 보유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기술을 상호 연결(Bridge)해 주는 기술거래 플랫폼(<https://tb.kibo.or.kr>)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 IP를 발굴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술이전 및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 R&D재발견프로젝트('15~) 지속 점검·확대('20, 사업화 매출액: 274억원)

- 출연연-수요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연계 공동연구 및 애로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R&D* 추진

* 출연(연)의 수요 기반 R&D과제 확대(건): ('20) 401 → ('26) 450

- 국가 R&D 성과기술을 대상으로 시제품의 고도화, 시험 인증, 비즈니스 모델 기획 등 사업화* 지원

*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21~)」 사업화 성공률 40% 이상 달성('22~'23)

- 대학·공공연의 지속가능한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IP 수익금 재투자 지원'의 대상기관**(예: ETRI)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 대학·공공연이 지원자금(수익금 재투자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특허 사업화를 추진하고, 발생한 기술료의 일부를 회수하여 타 유망특허 사업화에 재투자
 - ** IP 수익금 재투자 지원기관 확대(개): ('19) 6 → ('20) 9 → ('21) 14

2 IP 서비스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신성장서비스 시장 확대 지원

-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기획 등 사업화 컨설팅(1단계)*과 R&D, 제품화, 시험인증 등 사업화 R&D(2단계)** 지원
 -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특허법인 등)를 활용, 신시장 진출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기획, IP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원
 -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억원): ('22) 118 → ('26 목표) 213
- IP 취득·관리·활용 및 거래 등을 지원하는 IP 서비스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IP 서비스 수행 및 개발 등 지원
 - ※ IP 서비스 기업 지원 바우처(억원): ('20) 30 → ('26 목표) 50
- IP 서비스 기업의 기술컨설팅 역량*을 활용하여 대형 공공 IP 기술이전** 거래 촉진 및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 기술 발굴, 제품-서비스 단위의 기술패키징, 기술 마케팅, 사후 지원 등
 - ** 기술이전 건수(건): ('20) 200 → ('26 목표) 254
- 창의적·도전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IP 권리 확보·활용 지원
 - ※ ('21) 1단계 BI 신규과제 선정 → ('22) 2단계 지원과제 선정 및 후속 R&D 지원
 - 신성장서비스* 및 제품-서비스 융합** 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BI 연계형 R&D 과제에 대한 IP 확보·활용 지원
 - * (예) 헬스케어, 웰니스, 스마트홈, 핀테크 가상·증강현실 레저 등
 - ** (예) 제품에 ICT기술을 이용한 진단·관리·활용 서비스 결합

① 메타버스·AI 등 신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 메타버스 환경에서 IP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정비 추진
 - 메타버스 내에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상표 보호를 위해 디지털 상표 사용 및 침해 행위* 관련 상표법 개정 등 법제화 추진
 - * 상표사용 포괄정의 규정 도입검토 및 '혼동가능성'을 고려한 침해판단 등
 - 디지털 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지털 물품의 디자인 보호대상 포함 및 유통 등 행위의 침해행위 규정 마련(디자인보호법 개정)
- 메타버스 사업자·이용자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안내서* 마련
 - * (주요내용) 서비스 종류별 IP 이용 및 침해 유형, 물품 거래 등에서 활용되는 대체불가토큰(NFT) IP 안내 등
-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검토를 위해 국제 동향·추이를 고려하여 저작권법 개정 또는 관련 특별법 제정* 논의('22~)
 - * (주요내용) AI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권리 주체 등
- AI를 이용한 진단방법, 로봇에 의한 수술방법 등 신기술과 결합한 의료기술(방법) 발명의 특허 보호를 위한 법령(특허법) 개정 추진
 -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에 대한 범위를 넓히되, 그 역기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중

② 산업재산 정보 및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 기반 마련

- 산업재산 정보*의 국가적 수집·활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 추진
 - * 산업재산(특허·상표·디자인)의 창출·활용 과정에서 생성·분석되는 모든 지식·자료
 - ** 주요내용(안): 산업재산정보의 정의, 관리·활용 지원,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등

- 연구데이터의 활용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권리·이해관계 분석, 연구현장 의견 수렴 등 추진
 - 데이터의 생산·관리·가공·활용 시 이해관계자 간 권리*와 책임, 계약·협약·라이선스 활성화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등 검토
 - * 개인정보 포함 연구데이터의 경우 정보주체와 관련된 권리 또는 통제권 고려
 - 연구데이터를 생산·등록 및 표준화*하고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 *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관리계획(DMP)' 의무 대상의 점진적 확대
 - ** 연구데이터의 주기적(연1회) 등록을 통한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등

③ 융·복합기술 심사 서비스 체계 구축

- 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융·복합기술 IP 출원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화 판단기준 및 심사 프로세스 정비
 - 심사실무가이드를 추가로 제정한('21)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등 기술분야의 경우, 개정 필요사항을 정기적으로 정비*('22~)
 - * 기술분야별 IP 이슈 점검 등을 통해 3년 주기로 심사실무가이드 개정('23~'26)
- 심사관 부족* 등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 유지를 위한 AI 기반 심사 시스템 지능화 추진
 - * IP5 국가(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중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 최다
 - AI 기반의 특허 및 도형상표 분류 추천시스템, 유사특허 검색 파일럿 시스템 등 적용 및 고도화('22~)
- 융·복합 디자인 분야에서의 IP 심사 고도화를 위해 新분류체계 도입*에 따른 디자인 DB 검증 및 최적화
 - * '16년 로카르노 국제 디자인 분류를 기반으로 기존 약 1천만건의 디자인 DB를 재분류하여 '21.7월부터 신분류체계 디자인심사 도입

전략 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현황 및 추진과제

- (현황) 주요 국가의 IP 통상공세 강화, 기술유출 영향 심화 등으로 IP 보호 문제가 부각되며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강화 필요
 - 해외 현지에서의 IP 침해 예방 및 분쟁 대응의 중요성 증대
 - 국내에서의 IP 분쟁 해결과 권리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IP 공정거래 촉진 유도 등 필요
- (한계)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유출시 수사 역량 및 대응체계가 미비하고, IP 분쟁 발생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미흡
 - 국내외 기술유출 방지 체계 마련 및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필요
 - 국내에서의 IP 분쟁과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및 자율적 해결 유도를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어려움 상존

환경분석

- ❖ 핵심기술 침해·유출시 대응 체계 및 IP 분쟁 해결 제도 마련 필요
- ✓ 국가 핵심기술 침해방지 체계 미흡
- ✓ 정부기업의 기술유출 대응역량 강화 필요
- ✓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추진과제

- ❖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 ✓ 국가 핵심기술의 전략적 IP 보호를 위한 수사 역량 강화 및 사전예방 제도 개선
- ✓ 국내외 IP 침해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
- ✓ IP 분쟁 해결 시스템 고도화

추진방향 및 목표

- ◆ IP 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술유출 방지 및 침해·분쟁 대응 강화
 - ⇒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및 IP 침해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IP 침해 분쟁시 권리자 구제 제도 등 개선

- ▶ (목표1) GIPC 종합지표 순위: ('21) 12 → ('26) 7
- ▶ (목표2)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억원): ('19) 102 → ('26) 50
- ▶ (목표3) 대체적 IP 분쟁조정해결 건수(건): ('20) 63 → ('26) 114

IP 보호 관련 주요이슈 및 추진과제

주요이슈	추진과제
<p>① 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보안체제 등 국가간 갈등 요인 심화</p> <p>※ 최근 약 6년간('16~'21)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21조 4,474 억원('21.7, 국정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2-1-1.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수사 강화</p> <p>2-1-2.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방지 제도 강화</p>
<p>②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및 대·중소 기업 간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심화</p> <p>- 매년 국내에서 60조원 영업비밀 피해액 추산('21.8, 특허청)</p> <p>- 최근 5년간('14~'18)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246개, 피해액은 5,400억('20.2, 중소기업중앙회)</p> <p>※ 상생협력법 개정('21.7, 징벌적배상 등)</p>	<p style="text-align: center;">+</p> <p>2-1-1.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수사 강화</p> <p>2-1-2.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방지 제도 강화</p> <p>2-1-3. 핵심기술 보유 기관·기업의 IP 보호 역량 강화</p> <p>2-2-4. 대·중소기업간 IP 공정거래 촉진</p>
<p>③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위조상품 유통 및 브랜드 무단선점, 외국기업과의 특허소송 등 국내외 상표권 피해 급증</p> <p>※ 미국 내 한국 기업 특허 분쟁건수(건): ('18) 23 → ('20) 35 (특허청, '21)</p> <p>※ 중국의 상표 무단도용(건): ('17) 977 → ('20) 3,457 (3.5배 급증)</p>	<p style="text-align: center;">+</p> <p>2-2-1. 국내에서의 IP 침해 방지 강화</p> <p>2-2-2. 해외에서의 IP 침해 방지 및 분쟁 대응 지원 강화</p> <p>2-2-3.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력 강화</p>
<p>④ 국내에서의 해외 IP 침해 대응 미흡 지적(유럽상공회의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p> <p>2-1-1.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수사 강화</p> <p>2-2-1. 국내에서의 IP 침해 방지 강화</p>
<p>⑤ 방송, 게임 등 한류콘텐츠에 대한 모방, 한류 이미지를 내세워 우리 기업 모방 제품 판매 등 관련 피해 확대</p> <p>※ '16~'18 영화계 불법복제 피해 규모: 2조 6,499억원(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9)</p> <p>※ '17~'18 웹툰 불법복제 누적 피해액: 1조 8,621억원(한국콘텐츠진흥원, '18)</p>	<p style="text-align: center;">+</p> <p>4-2-1.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p> <p>4-2-2.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불공정 거래 개선</p> <p>4-2-3. 초실감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p>

①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수사 강화

-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수원지검)을 중심으로 고도화·지능화 되는 국가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 실시
 - 기술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검찰청 수사 전담인력 확충* 및 기술유출 수사 장비 도입·보급 확대
 - * 전문경력 산업기술 수사관 및 전문경력관을 채용하여 전담부서 배치('20~)
 -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 보호 및 유출·탈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교류* 등을 통해 공조수사 체제 강화
 - *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
-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특허, 영업비밀, 디자인)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
 - * 상표(위조상품)·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 ** 산업재산조사과 →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 부정경쟁조사팀(아이디어 탈취 등 행정조사)으로 개편(47명 → 58명, '21)
 - 심사·심판 전문가, 수사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경찰 전담조직·인력(22명, '21) 지속 확대
- 특별사법경찰(특허청), 검·경찰 등 수사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 사건 이송, 기술유출 신고·접수 등 행정조사와 수사간 협력 강화
 -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법무부·법원·검찰·경찰 등의 표준화된 정보시스템

②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방지 제도 강화

-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해 계획적 인력 빼가기 등으로 영업비밀을 탈취한 법인에 대한 가중 처벌 추진

- 침해자가 침해수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하되, 몰수 불가시 그 가치에 상당한 금액 추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아이디어 직접 탈취는 물론, 탈취를 알고도 제공받아 사용한 **간접탈취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제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新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2~'26)**」 수립

* 메타버스, VR과 같은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상품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

3 핵심기술 보유 기관·기업의 IP 보호 역량 강화

-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 기술이전 협의시 필요한 고려사항 등을 제공하는 '**IP 가이드(체크리스트)***' 마련('22~)

*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기준, 특허관리 비용 부담, 라이선싱 조건, 실시료 산정방식, 분쟁 발생시 소송 주체 및 소송비용 부담 등

-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역량 향상 및 보안환경 개선**

* 보안관리 체계, 보유자산의 분류 및 통제, 인력관리, 보호구역 관리, 정보 시스템 관리, 유출사고 대응 및 복구(기술유출 실태) 등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호조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 향상 및 보안환경 개선****을 유도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21.1)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보안역량 평가지수(점): ('20) 82.3 → ('26 목표) 86.0

- 산업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보안영역별 취약점 진단, 미흡사항 해결, 대응방안 제시 등 **컨설팅·교육*** 실시

* 보안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인력, 자산,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등 취약점 진단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산업기술보호 교육 확대 지원**

1 국내에서의 IP 침해 방지 강화

- 주요 항만세관 검사장을 중심으로 TIPPA*, 지식재산권자, 세관 등 합동으로 IP 침해물품 단속** 강화
 - *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 ** 통관단계 IP 위반 적발 실적(건): ('20) 2,513 → ('26 목표) 4,946
- AI를 활용한 IP 침해물품 판별 시스템 및 장비 개발(~'23)을 추진하고, 관세청 세관직원에게 대한 교육 실시
- 소비자가 상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상표 표시 및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위조상품 차단 연구 추진

2 해외에서의 IP 침해·분쟁 대응 및 제도 강화

- 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개선
 - * 수출기업 대상으로 IP 종합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1개국에 17개소 운영('21)
 - IP 출원·분쟁이 많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은 국가별로 운영하고, 현지 진출기업 수 및 IP 출원·분쟁이 적은 국가는 권역별로 도입*
 - * 러시아 IP-DESK를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크 등) 담당 IP-DESK로 전환하고, 중동·아프리카, 남미 권역 IP-DESK 신설 추진
- 해외 진출 K-브랜드 기업의 IP 침해 방지를 위해 중국·동남아 국가 등의 해외세관과 협력하여 국경조치 및 단속 강화
 - ※ 한류의 인기에 편승한 K-브랜드 IP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중국·아세안 등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유통 분석보고서 확대** 제공
 - * 해외 온라인 쇼핑몰 내 우리기업을 위조한 상품 판매 모니터링(한국 내 운영)
 - ** ('20) 결과보고서 제공(年 1회) → ('22~26) 차수별 보고서 제공(年 3회)

- 아세안 지역에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채널 확대
 - * ('18) 라자다(LAZADA) → ('20) 쇼피(SHOPEE) → ('22~'26) 토코피디아(TOKOPEDIA), 큐텐(Qoo10) 등 확대
 - 현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 대응국가 확대* 및 정보제공 횟수 강화**
 - * ('19) 중국, 베트남 → ('20) 태국(추가) → ('21) 인니(추가) → ('22~26) 필리핀 등(추가)
 - ** ('19) 2개국/18회 → ('20) 3개국/36회 → ('21) 4개국/54회 → ('22~26) 7개국/70회 이상
-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현지 지원활동 강화
 - 해외 지재권 관련 정책·동향 파악 제공, 현지 당국과 네트워크 구축, 공관 및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등 추진

③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력 강화

- 특허분쟁위험 정보 및 조기 진단 제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분쟁 사전예방 강화
 - 분쟁정보·특허DB 분석*을 통해 분쟁 고위험 기술분야를 도출하고, 분쟁 대응을 위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
 - * 기술분야별 특허분쟁 현황, 상위기업 특허점유율, 특허 피인용 횟수 등 분석
 - ** 이의신청, 무효심판, 회피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 등
 - 소부장 등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 특허·제품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기업 맞춤형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
 - * 지원기업(개): ('22) 50(소·부장) → ('23~) 200(소·부장, BIG3 등)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분쟁 사후대응 지원 강화

- 소·부·장, BIG3·백신기업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확대
 - * 지원기업 및 예산(개/억원): ('21) 396/109 → ('22) 480/139
 - **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비용 지원한도를 1억원/년 → 2억원/년으로 상향
- 특허분쟁 유형(경고장 수령, 침해피소, 침해제소 등)에 따라 경쟁사 특허 무효화·회피설계·역공격 등 맞춤형 대응전략 제공 확대
- ※ 예산 증액 및 지자체 예산 매칭: ('22~) 인천, 대전, 충남, 부산, 충북

4 대·중소기업간 IP 공정거래 촉진

-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 추진 및 관련 심사지침* 개정
 - * 기술자료 요건 완화 등 하도급법 국회 통과('21.7)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추진
-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 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 등 기술침해행위 지속 감시·점검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처벌
 - * 특허청, 대학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기술전문가 위촉을 통해 집중 조사
-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 공정거래협약을 확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지원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유도*
 - * 협력사에 대한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등의 경우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실적도 평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 유도
 - 협력사에 대한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실험장비 지원, 인증취득 지원 등 대기업의 기술지원 노력*을 협약이행 평가항목으로 포함
 - * 기업당 기술지원 실적(억원, 출처: 동반성장위원회): ('16) 62.5 → ('19) 143.0
 - 기술협력의 결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된 사례 등 기술협력 우수사례 공유

① IP 침해 분쟁에서의 권리자 구제 제도 강화

-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IP 관련 소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송 관할집중*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 * IP 소송의 전문화를 위해 IP 소송 제기·심리는 특정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 (1심) 고등법원 소재지 6개 지방법원(서울중앙, 수원 등) → (2심) 특허법원
 - ** (현행)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 민사소송 → (개선방향)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침해금지 가처분 2심, 형사소송
- 특허침해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 보존명령**’ 등 증거조사(수집)제도 개선 추진
 -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고의 공장·사무실 등에 전격적으로 출입하여 증거 수집
 - ** 증거훼손·멸실 및 사용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증거자료의 보존명령
-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해 모든 당사자계 특허심판*의 구술심리 실시**(단계별 확대 및 특허법 개정)
 - * 특허권이 부여된 후 발생한 당사자간(청구인·피청구인)의 권리범위 등 분쟁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행정심판
 - ** 심판청구 취하·각하, 답변서 미제출, 당사자 구술심리 개최 미희망 등 제외
 - 당사자가 사무실(자택*)에서 온라인 접속하여 심판부(심판정 또는 사무실)와 함께 심리할 수 있는 재택 영상구술심리시스템 구축
 - * 현재는 특허심판원 서울사무소에 출석하여 영상구술심리(전체 구술심리 중 65%)

② IP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 IP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관련 국·내외 이용방법 안내, 저작권 분쟁조정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 인식 및 편의성 제고
 - * 소송이 아닌 중재, 조정, 화해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 저작권 조정신청, 준비서면 작성 등 저작권 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22~)
- ※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종식
-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조정대상을 기소 전 형사 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조정 이용대상 확대('21.12~)
- 세미나, 워크숍·컨퍼런스 등 개최를 통한 조정·중재인 전문성 강화

전략 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현황 및 추진과제

- (현황) IP 기반 혁신창업,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등 지원 필요
 - IP 기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필요
 - IP금융 자금 조달, 해외 IP 확보 등 효율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요소별 지원체계 고도화 필요
- (한계) IP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확보 미흡
 - IP 기반 창업, 기술거래, 사업화 등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 창업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투·융자 등 IP금융 확대 필요
 -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 IP 확보역량 미흡

환경분석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기반 창업 및 성장 지원 고도화 필요 ✓ IP 기반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미흡 ✓ IP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 해외진출 IP 확보를 위한 지원 서비스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IP 기반 혁신형 창업 촉진 ✓ IP 투·융자 확대 및 관련 인프라 조성 ✓ 중소기업의 해외 IP 확보 및 진출 촉진

추진방향 및 목표

- ◆ IP 기반 창업, 자금 조달, 글로벌 진출 등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 ⇒ IP 창출 및 권리 확보를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투·융자 금융 지원,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의 고도화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 확립

- ▶ (목표1) 기술기반 창업기업 비율(%): ('20) 15.4 → ('26) 20.7
- ▶ (목표2) IP 투·융자 규모(조원): ('20) 2.1 → ('26) 4.0
- ▶ (목표3) 중소·중견기업 IP 무역수지(억불): ('20) -28.9 → ('26) -15.3

①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유도하기 위한 IP 기반 창업 지원

- 대학·출연연·공공연 등의 실험실을 창업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 우호적 인사·학사제도 개선, 후속 R&D, IP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 (예)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와 연계한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등 다부처 협업 실험실 창업 지원사업 추진
- 17개 시·도의 'IP 창업존*'을 통해 지역의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고도화하고 IP 권리화 지원
 - *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IP 기반 창업자 발굴을 위한 지역 거점(17~)
 - ※ IP 창업존 수료자(명): ('20) 1,477 → ('26 목표) 2,380
-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경로를 다양화하고,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지원
- 바이오헬스 분야 등 핵심 IP 기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관리 및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창업 및 전주기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18~)'에 PM(Project Manager)제도 도입('22~)
 - ※ 바이오헬스 우수창업기업 발굴 건수(개, 누적): ('20) 689 → ('26) 1,689

② IP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IP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청년층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확대**
 - * 기술창업 위주 청년 창업자에 대한 창업 쏠과정 지원('11~, 전국 18개 운영)
 - ** IP 특화교육 및 코칭(회): ('20) 31 → ('26 목표) 56
- IP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발명진흥회·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분야별 전문가(변리사 등) 등을 통해 IP 실무교육 강화
 - ※ 입교기업의 지재권 출원(건): ('20) 696 → ('26 목표) 807

- 초기 창업기업이 IP 경쟁력을 갖춰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P 기술·경영 전문컨설팅 서비스(IP 나래 프로그램)* 강화
 - * 창업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내 IP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IP나래) 운영('17~, 특허청)
 - 중앙부처, 지자체, 투자·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IP 컨설팅 지원기업의 자금 조달, R&D, 사업화 연계 등 지원
- ※ IP 컨설팅 수혜지역을 광역RIPC(17개)에서 기초RIPC(8개)까지 확대(총 25개, '20~)

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확대

- 혁신기업에 대해 IP 가치평가와 연계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특허계정에서 IP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여 IP성과 확산
 - * 규모(억원): ('21) 11,635 → ('26 목표, 특허청) 18,700
 - **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IP 매입 등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 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신산업·신성장 분야의 기술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정책펀드*를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촉진
 - *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등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09~)

② IP 투·융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 IP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IP 가치평가기관 지정제도 개선, 지식재산공제*의 자립화** 등 추진
 - * IP 분쟁·출원 등의 비용부담이 발생한 가입자에 납입금의 5배까지 대여하고 사후 상환토록 하는 상호 부조 공제제도(도입: '19.8~, 대출 시행: '20.8~)
 - ** 가입자(건): ('20) 5,206 → ('26 목표) 27,000(부금액 8천억원)
 - IP 가치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평가기관 진입 확대
 - * (기존) 평가인력 10인 이상 보유 → (개선) 평가인력 5인 이상 보유
 - 자금력이 부족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보고서* 비용 지원** 지속 확대
 - * 무형자산인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등급·점수 등으로 나타낸 보고서로서 기술력 판단 기준 및 투자 유치 등에 활용
 - ** 평가비용 지원(억원/건): ('20) 8.4 / 100 → ('21) 18.5 / 400
- ※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력 평가를 확대하고 보증용 가치평가 제도 신설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IP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허평가 시스템(KPAS)* 내 IP 콘텐츠 개발 및 정보 제공
 - * 전문평가자의 평가데이터, 평가패턴 등을 빅데이터 및 딥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특허의 평가등급 및 가치금액을 온라인상에서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
 - 중소기업 보유 특허에 기반한 특허 출원현황(기술분류, 산업별), 특허집중도*, 특허영향력 지수** 등 특허관련 지표*** 개발·시각화
 - * 특허 점유율을 통해 특허 분야별 시장 집중 정도(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 특허증가율-특허점유율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분야 및 경쟁 기술분야에서의 영향력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 전체 특허군(대기업·정출연 등 보유특허 포함)에 대한 특허분석과 병행하여 중소기업 보유특허군에 특화된 분석콘텐츠 제공

- 시장에서 거래되는 IP 거래정보, IP 평가정보, 기업정보 등을 수집·연계하여 IP 금융·평가시장에 제공
 - ※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IP 금융관리시스템(<http://smart.kipa.org>)에 DB를 탑재하여 시중·지방은행에서 활용

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IP 확보 지원

-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IP 확보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IP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IP 바우처* 확대
 - * IP 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해외 IP 출원(건): ('20) 1,421 → ('26 목표) 2,286
- 법무부 중소기업 9988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서비스 지속 지원
 -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시, 국내 기업의 IP 보호 및 해외에서의 IP 침해 예방을 위해 법률지원 사업 안내 및 지속 지원
- 해외원천기술 이전·상용화 수요기업*에 대해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연계, 맞춤형·밀착형 특허보호전략 지원('22~)
 - * 러시아 등 '신북방 기초원천기술 이전 및 후속 상용화 R&D 지원사업' 대상 기업
 - ** 기업의 핵심·원천 특허 선점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사업(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연계

②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간 IP 심사 협력 및 제도 조화

- 주요국 특허청과의 제도·심사 실무 통일화를 위해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특허조화전문가패널(PHEP)* 과제 수행 등 적극 협력
 - * Patent Harmonization Expert Panel: 기업 인수·합병시 수반되는 특허권 이전 서류·절차의 통일화를 위한 IP5간 전문가 논의
- 우리기업의 빠른 권리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심사 협력을 강화하고, 신흥국과 신규 심사협력 추진
 - ※ IP5간 심사환경 통일화를 위한 신규협력 합의 건수(건): ('20) 15 → ('26) 20

전략 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현황 및 추진과제

- (현황) 디지털 플랫폼 일반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세계시장 진출 중
 - 플랫폼 경제 확산, 비대면 환경, 5G 상용화 등으로 온라인 콘텐츠·서비스가 확대되고 실감 콘텐츠(AR·VR 등), 게임 등 시장 확대
 - 음악, 영화 등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한류 콘텐츠의 입지를 굳히며 글로벌 경쟁력 확대 추세
- (한계) 한류 명성에 걸맞은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창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강화 필요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류 콘텐츠 확산 지원방안 필요
 -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시 대응방안 마련 시급
 - 콘텐츠 제작·방송 이해관계자간 불공정 거래관행 등 개선 필요

환경분석

- ❖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한류 확산 추세
- ✓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콘텐츠 제작 필요
- ✓ 한류 콘텐츠 침해시 대응방안 마련 시급
- ✓ 불공정 콘텐츠 거래관행 등 개선 필요



추진과제

- ❖ 콘텐츠 창출 지원과 피해 방지 대응
- ✓ 차세대·고품질 K-콘텐츠 창출·활용 지원
- ✓ K-콘텐츠 보호체계 강화
- ✓ K-콘텐츠 확산을 위한 제도 등 기반 조성

추진방향 및 목표

- ◆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시장 육성 및 피해방지 대응
 - ⇒ 고품질 콘텐츠 창출을 통해 한류 콘텐츠 시장을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IP 침해 단속 및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 (목표1) 콘텐츠산업 수출액(억불): ('20) 108 → ('26) 166
- ▶ (목표2) 문화콘텐츠 공정이용률(%): ('21) 79 → ('26) 85
- ▶ (목표3) 콘텐츠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수(개): ('19) 1,700 → ('26) 2,500

1 K-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IP 확보 지원

- 경쟁력 있는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원펀드 조성 등을 통한 자금 공급 강화
 - 제작 초기 단계, 소외장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 투자펀드 확대 조성*('22년까지 총 4,500억원 조성)
 - * 조성 규모(억원): ('20) 873 → ('21) 1,708 → ('22) 2,001
- 최신기술 및 기존 콘텐츠 IP 등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 확장현실(XR) 등 최신기술 활용·연계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 제작과제 수(개): ('20) 37 → ('26 목표) 58
 - 영화, 게임, 웹툰 등 기존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VR 등 기술 기반 실감콘텐츠 제작 신규 지원('22, 60억원)
 - '케이스타일 허브' 재개관('22.2월),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 구축('22, 20억원)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류 콘텐츠 체험기회 확대
 - * 미국(문화원 또는 박람회 연계, '22.3)

<한류 체험 인프라 사례>



- 콘텐츠 IP 융·복합 활성화 및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22~'24, 경기 고양시 일원)

- 장르별·분야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통한 한류 확산
 - 게임, 패션, 전시·공연 등 장르별 신규 콘텐츠 제작, 기존 콘텐츠의 메타버스 전환 등을 통한 맞춤형 제작 지원('22 신규, 161억원)
 - 'K-메타 월드'를 구축, 전 세계 한류 팬 대상 한류 콘텐츠 가상체험 기회 제공 및 한류 소비재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22 신규, 19억원)

② 해외진출 한류 기업의 맞춤형 지원 강화

- 콘텐츠 수출정보 플랫폼(웰콘, <http://welcon.kocca.kr>) 고도화*, 수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 기업에 콘텐츠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16~)
- 콘텐츠 해외권리 보호, 콘텐츠 현지화 지원 등 국가별 진출전략 모색 및 현지화 지원 강화
-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홍보 강화
 - 국내-해외 기업 간 화상 수출상담(웰콘) 지원 및 온라인 수출전시관*을 운영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한 콘텐츠 관련 상시 화상상담 지원
 - * 해외 바이어 대상 콘텐츠의 줄거리, 샘플영상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 **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8개소(북경·심천, 동경, LA 등)
 - 해외 국가·지역별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 콘텐츠 홍보행사 개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신흥시장 개척
 - * 콘텐츠 엑스포 등 현지 마케팅 행사 개최(연 3회 내외) 및 콘텐츠 박람회 참가
- IP 확보 제작사, 국내 OTT 플랫폼 등 대상, 현지 수출·마케팅·OTT용 콘텐츠 재제작(자막·더빙, 재편집 등) 지원('22, 22억원)

③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

-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산업의 저작권 이용허락 부담 완화를 위한 '확대 이용허락' 제도* 도입

- * 교육 목적 등 특정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신탁 및 비신탁 저작물을 모두 포괄적으로 이용허락(확대이용허락) 하는 제도
- 저작권 신탁단체가 권리자 위임이 있는 권리만 이용허락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 특정한 분야에 한해 **비위임 권리도 이용허락***
- * 단, 권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제외를 요청한(opt-out) 저작물은 불포함
-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마이닝 저작권 제한과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데이터마이닝 관련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신설
-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 국민과 기업의 저작물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예외를 규정**
- * 비영리 목적·비상습적 침해·저작권 침해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 등
- 형사처벌 축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정우선주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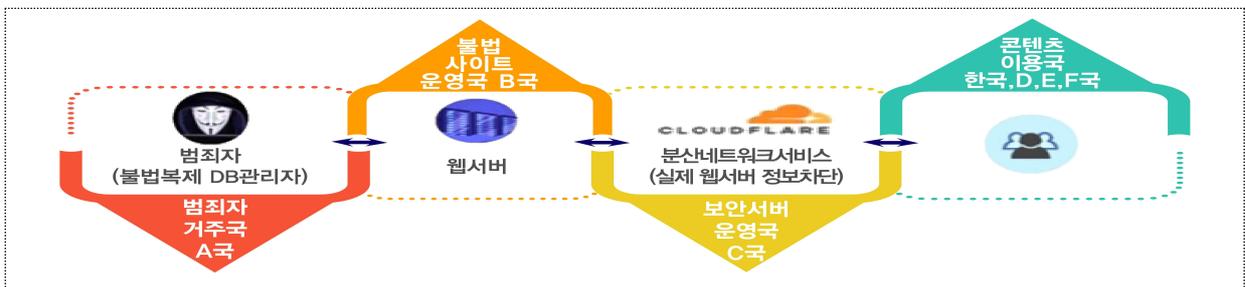
④ 1인 창작자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1인 미디어 창작자 지원·육성을 위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및 확대 추진**
- * ('21~) 20개사 입주 지원 / ** ('21) 20개사 → ('22) 34개사 입주 지원
-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집적화된 **특화 단지를 조성·지원**하여 창작자-기업간 상호협력,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등 시너지 제고
-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소비 변화에 따라 **1인 창작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확대('20~, 연간 100여명 이수)
- 광고 기획·촬영·편집까지 독자적 광고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르고, 교육 수료 후 광고주와 연계한 광고 공모전 개최 등 창업 지원 강화

1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문체부-경찰청-인터넷폴' 협업 추진
 - 온라인 공간에서 해외기반(범죄자 국외 체류, 해외 서버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웹툰·링크·P2P 불법사이트 등)에 대응

< 해외서버 기반 온라인 저작권 침해현황도 >



- 해외 불법사이트 서버 소재 국가 및 공조수사 협업 국가와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추진('21.5~)



-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 회의 개최, 국제회의 한국 개최('22), 정례 분석 회의 및 법·정책연구 등 공조체계 구축('21.11~'26.4)
- 국제화·조직화된 침해사이트에 대한 공조수사, 유사침해 확산* 차단을 위해 문체부, 경찰청 및 민관협력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
 - * 불법사이트 폐쇄 후 유사 대체 사이트 생성
- 불법경로 운영자에서 콘텐츠 유포자로 수사대상 확대, 링크사이트, 게임, 웹하드까지 수사분야 추가

-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된 불법 영상물·도박 등 범죄에 대해 경찰청-문체부 간 종합적인 연계단속 추진
- 저작권 침해 발생에서 대응조치까지의 단계별 업무를 통합시스템 기반으로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22~)
- 단계별 업무를 통합 연결하여 침해정보 통합 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정보 종합분석 후 맞춤형 정보 제공
- ※ 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등 저작권 보호대응 종합시스템 구축('22), 빅데이터 기반 통계시스템 및 저작권 보호 업무포털 구축('23~'24)

< 침해대응 업무처리 흐름도 >



②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불공정 거래 개선

- 표준계약서 제·개정 수요 발굴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 TF*' 구성 및 제도 개선안 마련('21.10~)
- * 문체부·공공기관·플랫폼·창작자 등이 참여하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정 추진
-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차적 저작권* 양도 강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협의 구체화시 엄정 조치
- * 원작에 기반을 둔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제작 권리

- 불공정거래 신고·상담창구인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피해 상담, 피해구제 등 지원
 - *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 신고-접수-상담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fair.kocca.kr)
 - ※ 불공정행위 피해 소송비용 지원, 분야별 협회·단체 연계 신고창구 운영 등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19.7월)의 이행 여부 점검(반기별)

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저작권법)·제도 개선

- 창작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추진
 -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가와 발생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시, 양수인에게 보상(수익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 권익보호를 위한 ‘창작자 표시 의무’ 신설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유지하되, 실제 창작에 기여한 자(직원 등)의 성명 등을 표시할 의무 부여
 -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법인으로 규정(저작권법 제9조)

②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을 위한 공공 기반 구축
 - 저작물 유통사업자 등의 이용정보 기록을 중립 기관(미정)에서 통합 수집하고 권리자 단체 정산시스템과 연계하는 통합전산망 운영
 - 유통사, 방송사 음원 정보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권리 정보를 통합한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산·분배의 완결성 확보
- 공유저작물* 및 휴면저작물**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권리자 불명 저작물 수집·제공 확대 추진
 - * 저작권 기증·만료 등으로 일반인이 저작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
 - ** 권리자가 불분명한 저작권
-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의 발굴 및 원스톱 개방 지원
 - *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소유·생산한 연구보고서, 사진·DB 등 저작물

- 공공저작물 권리관계 확인 및 법률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창작자(온라인 콘텐츠 개발자) 및 이용자(공유마당 방문자, 활용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위주로 확보
- **국민참여형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해 창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저작물이용허락표시제도(CCL)***」 활용 확대
 - * 저작권자 허락 저작물(자유이용저작물)의 사용시 저작권자 정보 등을 표시
 - 누구나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③ OTT 콘텐츠 등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국내 미디어 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OTT 서비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약 2,3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투자* 추진
 - * 과기정통부 펀드 결성('21.4)·투자('21.6~), 문체부 펀드 결성(~'21.10)·투자('22~)
-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대형 프로젝트 제작 및 자체 IP 확보 지원**
 -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대형 프로젝트 제작 및 자체 IP 확보 지원을 위한 '드라마펀드' 조성('22, 400억원)
 - 신규 콘텐츠 IP 확보를 위한 OTT 콘텐츠 등 제작 지원* 확대
 - * 지원 규모(억원): ('21) 66 → ('22) 167 (과기정통부, 문체부)
- 온라인 영상콘텐츠 시장 성장을 반영하여 OTT로 유통되는 온라인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추진
 - * (현재) 영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의 일부 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 7% 중소기업 10%)
 - ※ 「전기통신사업법」, 「영화비디오법」 등 정비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규정 신설 추진

전략 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현황 및 추진과제

- (현황) IP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IP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도 확대되고, 글로벌 IP 이슈에 대한 적극적 국제협력 노력 요구
 - IP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와 양성기반 구축 중요
 - IP 분야 글로벌 이슈 해결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중요
 - 생물유전자원 관리 및 IP 문화 확산을 통한 저변 확대 필요
- (한계) 글로벌 IP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인재 양성, 국제협력, 대국민 소통 확대 등 선진적 IP 기반 마련 시급
 - IP 미래인재 및 시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전략 미흡
 - 글로벌 IP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 IP 협력체계 미비
 - 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대국민 IP 문화 정착 등 필요

환경분석

- ❖ 글로벌 수준의 선진적 IP 기반 시급
 - ✓ IP 인재양성 육성 기반 취약
 - ✓ IP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미비
 - ✓ 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필요
 - ✓ 대국민 IP 인식 및 문화 정착 미흡

추진과제

- ❖ IP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 IP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 ✓ 글로벌 IP 협력 이슈 적극 대응
 - ✓ 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 ✓ IP 가치 확산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

추진방향 및 목표

- ◆ 글로벌 IP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기반 강화
 - ⇒ 창의·융합형 IP 전문인력 집중 육성, IP 분야 국제공조 강화 등

- ▶ (목표1) 초·중·고 학생의 저작권 교육 수혜율(%): ('19) 6.3 → ('26) 8.9
- ▶ (목표2) IP 분야 국제회의 개최·참여횟수(매년/건): 15
- ▶ (목표3) 품종보호권 등록(건): ('20) 433 → ('26) 580
- ▶ (목표4)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개): ('20) 263 → ('26) 500

① IP 인력 실태조사 추진 및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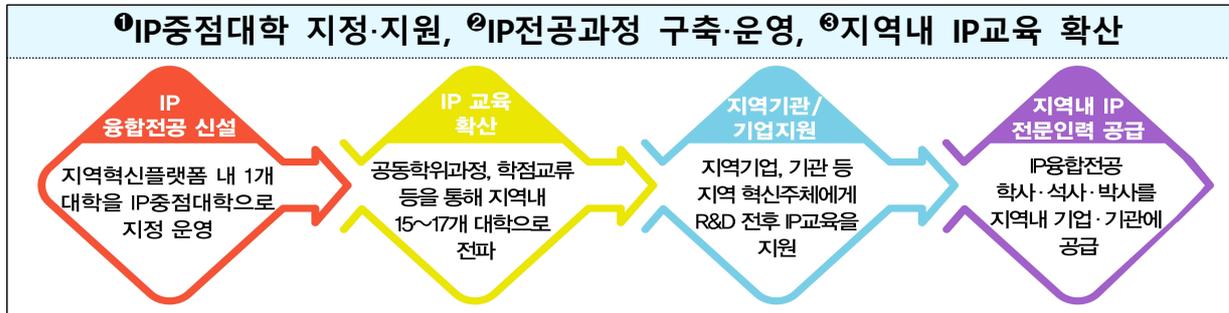
- IP 분야별 인력현황 등 IP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파악
 - '제3차 IP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종료 예정(~'22)에 따라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 실시('22)
 - IP 기반 혁신성장 견인 및 IP 인력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제4차 IP 인력양성종합계획('23~'26)*' 마련(~'22)
- * IP 인재상 정립 등을 위한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특허청, '22)」 등 반영

② 창의·융합 IP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고 대상 IP 교육 제공

-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의 확산을 위해 지역별 발명교육 거점기관을 설치*하고, 초·중·고 발명교육센터를 통한 발명 소양교육 제공
 - * 권역별 발명교육 총괄 지원 및 체험·심화교육 등을 담당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명교육법 개정('22)
- 발명교육을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기술·과학교과, AI/SW 교육 등)과 연계하여 편성·운영하는 발명교육 선도학교 확대*
 - * 규모(개교): ('21) 고교 28 → ('26) 초·중·고 84 이상
-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저작권 실천인식을 제고하고, 초·중·고생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 * 연간 100개교 이상 운영 / ** 연간 6,000회 이상 운영

③ 대학생 대상 IP 수요에 특화된 IP 전문인력 집중 육성

- 권역별 IP 중점대학을 통한 대학 내 IP융합 전공과정(학·석·박사) 운영 확대* 등 지역 핵심산업 특화 IP 전문인력 양성
 - * ('21) 3개(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 ('22) 4개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교육부)」과 협업·연계하여 지정 확대 추진



-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사업화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운영
 - * 기술사업화 대학원은 IP-R&D를 포함하여 지역의 반도체, 바이오, 항공, 기계·수송 등 관련 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 집중 양성(현재 총 11개 운영)
- 대학에 저작권 강좌 개설·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미디어, 정보기술 등 분야에서 저작권 지식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
 - ※ 매년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16~, '21년 총 22강좌)
- AI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IP 교육을 제공하여 IP 창출·활용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육성('22~)
 - * 혁신성장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양성 사업('20~)

4 국제표준 전문가, 여성 등 IP 전문인력 양성

-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등을 통한 주도권 강화를 위해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강화
 - 5G, AI 등 핵심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고경력 전문가를 선정하여 국제 표준화회의 참가 및 멘토링 지원
- 차세대 ICT 글로벌 표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ICT 표준전문가 교육을 제공하고,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지속 개발('22, 25종 내외)*
 - * ICT 표준화 입문과정, 기술분야별 국제표준화 기본과정, 표준화기구별 실무과정, R&D-표준-특허 연계 등 국제표준화 전략과정

- 거점별 창업보육센터를 선정*하여 센터별 입주기관(스타트업)의 교육 수요에 맞는 IP 교육과정 개발·운영
 - * 참여 센터 수(개): ('22) 10 → ('24) 12 → ('26) 14
- 여성인 발명 고취 및 관련 행사* 확대를 통해 여성 IP 전문인력 양성, IP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 유도
 - * 매년 세계여성발명대회 수상 및 여성발명왕 EXPO 개최
 - ** 여성새일센터 연계 IP-R&D 교육과정 운영: (21) 5회 → (22) 10회
 - ※ 여성의 PCT 출원 비율(% , WIPO): ('05) 11.3 → ('10) 12.8 → ('20) 16.5

① IP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정책 공조 강화

- IP5 간 협력 강화로 IP 분야 글로벌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탄소중립기술 등 첨단기술에 대한 IP5의 신지식재산 국제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협력 및 국가 위상 강화
 - 글로벌 IP 이슈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WIPO의 총회, 사업·예산 위원회 등 주요 회의체에 적극 참여
 - WIPO 주관 정책대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IP 이슈* 논의 및 규범 형성** 주도 추진
 - * (예) 현실세계-메타버스 간 IP의 상호이용과 침해 문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IP 이용허락 문제, 메타버스 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등
 - ** 아바타 유저는 특정 지역에 속하나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경제·사회 활동은 글로벌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하여 IP 보호제도 적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 필요
 - 현재 7개* 국가에서만 운영 중인 WIPO 지역사무소의 우리나라 유치에 노력하고**, 한국 IP 전문가의 WIPO 진출*** 확대 추진
 - * 알제리, 브라질, 중국,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 나이지리아
 - ** 특허청-문체부 협업을 통해 주제네바 대표부를 중심으로 유치 홍보
 - *** WIPO 총 1,530여명 중 국장급, 심사관, 전문직 등 한국인 30여명 근무('20)
 - WIPO 한국신탁기금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고, 유망특허기술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해 WIPO와 긴밀한 협의 추진
- WIPO 외 타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의 IP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 APEC(IP제도 이해), 인터폴(IP 집행),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IP와 산업개발) 등 국제기구와 IP 관련 신규 협력 추진
- 글로벌 IP 영향력 증대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 IP 관련 공적개발원조(ODA)의 외연 확장을 위해 민관 협력(특허청, 과기정통부, 농업진흥청, 굿네이버스 등) 신규 사업 발굴 추진
 - 신흥국·저개발국에 대한 IP 행정 컨설팅 지원 및 전문 행정인력 파견 확대를 통해 한국형 행정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

2 IP와 연계한 국제 통상전략 수립 강화

- 국내 유명상표를 도용한 악의적 상표 출원, 한류 이미지에 편승한 부정경쟁행위 등 방지를 위한 국제 통상전략 수립
 - 신흥시장에서의 통상규정 강화 등 맞춤형 IP 협상전략* 수립
 - * 악의적 상표 금지, 도메인 이름 보호, 국가명칭 보호, 지리적 표시(원산지) 등
-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국제 IP 보호환경의 변화를 통상협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
 - * 영업비밀의 정의 및 침해유형의 확대, 민사상 입증책임의 전환 등

3 남·북한 IP 교류·협력 방안 마련

- 남·북한 IP 교류·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남·북한 교류를 위한 다국적 IP 포럼 등 개최 추진
- IP 분야의 남·북한 협력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분야별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부처별 역할 정립 추진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 산림 유망자원 확보 및 품질 관리

- 바이오 소재 산업의 미래자원으로서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조사·분류 및 정보화 강화
 - 한반도 식물 계통분류연구 심화 및 분포연구 고도화 등을 위한
자생수목 대상 종합 총서 「한반도 수목지*」 연차별 발간 추진
 - * (1단계, '16~'20) 종별 정보 수록 e-book → (2단계, '21 이후) 속 수준의 종합 총서
- 종자·바이오산업 수요자별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산림생명자원을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리스트 작성
 - * 유망자원 수집 누적: ('22) 1속 또는 종 → ('26) 5속 또는 종
- 산림유망자원의 기초·정밀특성평가를 통한 산업적 이용가치 발굴
 - ※ 종간·종내 개체별 특성조사('22~'26, 7종), DNA 유전자 정보 분석('22 1종 →
'26 5종), 함유물질 정보 분석('22 1종 → '26 5종)
- 산림 신품종에 대한 유통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대학이 보유한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 계약시 설정등록* 강화**
 - * 보호품종의 실시(사용) 계약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등록
 - ** 통상실시 설정등록 건수(건/년): ('08~'20) 0 → ('22~'26) 20

2 야생생물 조사·발굴 및 생물자원의 확보 강화

- 한반도에 자생하는 다양한 분류군*의 신종·미기록종 발굴을 위한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생물자원** 확보
 - * 곤충, 무척추동물, 균류, 조류(藻類), 원핵생물 등
 - ** 척추동물, 식물, 곤충, 무척추동물, 균류 등의 표본, 배양체, 유전정보 등

○ 나고야 의정서 적극 대응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해 야생생물소재 은행*을 활성화하고 야생생물 특성에 맞는 소재·정보 표준화**

* 생물 및 생물로부터 얻은 자원을 확보·관리하고 분양하여 R&D 지원

** 국가생물종 목록('19 52,628종) 대비 확보율(%): 35('21 20,000종) → 40 ('25 21,500종) → 50 이상 유지('30 이후)

- 수요 대응을 위해 품질검사가 완료된 종 중심의 생물소재 확보·관리
 - 야생생물 소재에 대한 분류군별(종정보, 채집지 등), 소재 특성별(배양 조건, 형태 등) 기초 정보 및 품질 관리 표준안 마련
 - 생물자원 국제표준을 분석·검토하여 야생생물 소재에 적합한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소재 특성정보 DB 시스템* 보완
- * 유전자원, 천연물 등 다양한 생물소재의 특정정보를 저장(species.nibr.go.kr)

③ 해양수산자원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데이터센터 구축

○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 차세대 수산종자 육종기술 확립* 및 수산종자 검인증 기반** 마련('22~)

* 수산종자 디지털육종 플랫폼 구축 / ** 수산종자 검인증기술개발

○ 해양수산 R&D 사업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해양수산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22~)

① 정당한 IP 보상 문화 정착 및 가치 확산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을 확대*하여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 인증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지속 추진
 -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개): ('20) 263 → ('26 목표) 500
- 기업 CEO 및 임직원 대상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직무발명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 도입 확산
-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한 절차, 양식 등을 포함하는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IP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적극 참여 유도

② 대국민 IP 정책 소통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국민과의 소통 채널 마련을 통한 IP 문화 저변의 확대
 - 일반국민 대상 발명대회, 페스티벌 등 행사시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 방식의 데모데이 추진을 통한 IP의 사회적 붐 조성
 - * (예) 스타트업 대상으로 IP 기반 해외진출 사례, IT·바이오·3D프린팅 등 사업 분야별 특허 기술과 분쟁 동향 등 사례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IP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해 IP 이슈 공론화의 장 마련
 - IP 관련 유관기관* 발굴·협업체계 구축 및 교류 행사 기획
 -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네트워킹 대상기관들을 발굴하고, IP 현안 발굴과 공론화를 위한 공동 행사, IP 박람회 등 기획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IP 정책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및 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다양한 행사* 연계
 - * 위원회 행사(지식재산의 날, 토크콘서트 등), 특허청, 문체부 등의 주요 IP 관련 행사, 한국공학한림원의 IP전략포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학술대회 및 포럼 등

③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IP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IP 기반 핵심기술 확보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속 추진

* 14개 시·도의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 스타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 지자체·지역대학·기업이 협력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핵심역량을 갖춘 지역 IP 인재 양성

※ 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 강원·대전·부산지역 대학 지원

- 지역 1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저작권서비스 센터*에서 저작권 교육·상담, 저작권 육성 지원, SW 이용 컨설팅 등 제공

* 지역 저작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14~, '22년 15개)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지속적인 운영 강화를 통해 지역의 발명 풍토 조성, 지역 내 IP 창출 촉진 및 지역 기업의 IP 경쟁력 강화 추진

* 지역 IP 창출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25개 RIPC 운영('04~)

-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RIPC에서 특허맵, 디자인맵,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등 관련 컨설팅 제공

-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IP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P 서비스* 종합 지원

* 기술디자인 동향 분석 및 전략제시, 디자인·브랜드 개발, 해외출원비용 등 지원

지자체별 주요 추진과제

지자체명	주요 내용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보호 컨설팅'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RIPC 내부 변리사 활용 일반컨설팅 및 추가상담 소요시 심층컨설팅 진행 * 컨설팅 지원(건): ('20) 45 → ('26) 50 ○ 중소·벤처기업의 'IP 심판·소송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및 기업의 심판 및 소송 진행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 * 지원기업(건): ('20) 29 → ('26) 40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핵심 IP 선점을 위한 부산 AI그랜드 ICT연구센터 구축 운영*('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생태계 거점으로서 산업 데이터 전략·조정 및 인프라 조성과 활용지원 * (목표) 논문발표, 특허출원, 사업화: 45건 이상(매년) ○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를 통한 유망 프로젝트 발굴·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유망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으로 지역 문화콘텐츠 경제 활성화 유도 * 차세대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건수: 10건(매년)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소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IP 보호 플랫폼 등록 지원*('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 있는 소재·제조기업 기술의 글로벌 소재은행 등록 지원 및 사업화 가능성 높은 한의약 천연물질 확보 및 소재은행 등록 * 지식재산권 출원(건): ('21) 23 → ('26 목표) 28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주도 IP 금융투자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IP 보유 중소·벤처기업 투자 재원 마련 등 금융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해 인천혁신모펀드 조성('21~'24년 간 총 600억원 예산 활용, 6,000억원 투자재원 확보) * 직접투자, 출자조합 투자, 스마트모빌리티 투자(억원): ('21) 총 35 → ('26) 49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소기업 양산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양산화 지원, 디자인 컨설팅 및 전시회 추진 * 디자인개발지원: 6건(매년), 온라인마케팅 지원: 6건(매년)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기반 혁신성장도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허브도시 거점 기능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IP 컨퍼런스 개최('19.6.(1회), '21.11.(2회))를 통한 IP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국제IP 컨퍼런스 개최 및 글로벌 교류: 2~3건(매년)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계능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2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1만인 계능프로젝트를 통한 유전자 DB 기반 데이터 팜 구축초기 사업화 추진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계능기반 특허등록: ('22) 15건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특화산업(소·부·장) 분야 IP 강소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부장 핵심 IP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 부품·기술 국산화, 해외 이전 혁신기술의 상용화 지원(건수): ('21) 14 → ('26) 18

지자체명	주요 내용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R&D 과제에 대한 IP 전략 연계 지원* - R&D 기획 단계부터 IP 컨설팅 제공을 통해 IP-R&D 사업의 체계화 * 강원도 R&D과제 IP 전략 연계 지원: 2건(매년)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증강현실 등 융·복합 콘텐츠의 지역 R&D 육성·발굴* - 지역 기반 차세대 콘텐츠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랩 운영 * 콘텐츠 개발매칭(건수): ('22) 110 → ('26) 330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주력)산업 육성 지원* - 지역 주력산업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 중심으로 지역혁신기관 활용 중소기업 기술개발 집중 지원(20 35개 과제 추진) * 신규고용(명): ('22) 63 → ('26) 75 / 사업화매출액(억원): ('22) 143 → ('26) 172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식품 특화 R&D 전주기 IP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기술지원 및 파프리카, 수박 등 신제품 육성과 고품질 기술개발 * 농식품기업 기술지원: 72건(매년) / 신제품 우량화: 48건(매년)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신약 분야 IP-R&D 지속 추진* - 줄기세포 및 치매 관련 원천기술 확보와 신약 개발 * 인체 줄기세포주 확보: ('21) 2건 / 줄기세포 및 치매대지 유효성 평가: ('21) 각 1건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게임 사업화* 및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지원 * 기업 성장 단계별 및 게임 개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사전제작-예비창업-글로벌진출) ▶ 글로벌 강소 경북 게임기업 매출(억원): ('22) 27 → ('26) 27 ** 위치기반 실감콘텐츠, AI 활용 콘텐츠 등 제작 지원, XR 서비스 등 콘텐츠 기술 개발 ▶ XR 디바이스 기술개발(건수): ('22) 20 → ('24) 30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 분야 IP 역량 강화* -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지원 사업 및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 사업 * 지원기업 당 IP 창출: 4건(매년)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 기업: 38개(매년)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정 자원 보호 및 사업화 기술 확보*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 고부가가치 산업화 소재 기술이전: 2건(매년) / 증식·복원실적 학술발표: 1건(매년) ○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제주신화 스토리 IP구축,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 6건(매년) / 제주신화 IP저작권 등록: 1건(매년)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IP-R&D 추진* - 지역특화산업육성, 자율서늘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실증, 지역거점 스마트 기반구축 * 지역특화산업육성(건수): ('21) 20 → ('26) 22 / 자율서늘인포테인먼트 핵심부품개발(건수): ('22) 1 → ('24) 1 / 지역거점 스마트 기반구축 기업지원: 10건('22~'24)

구분	지표명(단위)	지표설명
대표 지표	① 표준특허 점유율(%)	◆ 국가 성장동력분야 핵심특허(표준, 삼극특허) 확보율
	② IP 무역수지(억불)	◆ 연간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와 저작권 무역수지의 합산 값
	③ IP 보호수준(IMD 순위)	◆ IMD에서 발표하는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의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항목의 한국 순위
전략1	1-①. 국가전략산업 특허당 피인용수(건)	◆ 국가전략산업 관련 기술*분야의 미국특허청 등록특허 당 피인용수(CPP: Cites Per Patent) 점유율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3D프린팅, 바이오마커, 디지털 헬스케어(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KISTEP)
	1-②. 공공연구기관 기술 이전 수입(억원)	◆ 공공연구기관(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수입
	1-③. IP 관련 법제 정비 건수(건)	◆ OTT, 메타버스, AI창작물, 탄소중립 등 디지털 신기술 IP 관련 소관부처에서 정비한 건수 ※ 법률 제·개정(발의), 시행령 제·개정, 훈령/고시/요령 제·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전략2	2-①. GIPC 종합지표(순위)	◆ IP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IP 자산의 사업화, IP 집행, 시스템 효율성, IP 관련 국제 조약 참여와 같은 9개 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매년 발간)에서 국제 IP지수(International IP Index) 조사·발표
	2-②.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억원)	◆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출·탈취로 인한 피해금액
	2-③. 대체적 IP 분쟁조정 해결 건수(건)	◆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분쟁조정건수 중 조정이 성립하여 해결된 건수
전략3	3-①. 기술기반 창업기업 비율(%)	◆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과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업종*의 창업비율 ※ 제조업+지식기반업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업종)
	3-②. IP투·융자규모(억원)	◆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으로 IP가치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이 IP담보대출, IP보증대출, IP투자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활동

구분	지표명(단위)	지표설명
	3-③. 중소·중견기업 IP 무역수지(억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IP 국제 거래 현황 *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기업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의거 외국인이 출자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공시한 기업
전략4	4-①. 콘텐츠산업 수출액 (억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관련 업종(2008년 제정, 콘텐츠 산업 특수분류 적용업종)
	4-②. 문화콘텐츠 공정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콘텐츠 이용량* 대비 합법저작물 이용량의 비율 * 전체 콘텐츠 이용량=합법저작물 이용량+불법복제물 이용량
	4-③. 콘텐츠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수(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콘텐츠 기업 중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기업수
전략5	5-①. 초·중고 학생의 저작권 교육 수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기초 교양교육으로 저작권 체험 교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을 이수한 청소년의 비율
	5-②. IP분야 국제회의 개최 참여 횟수(매년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분야 국제회의 개최·참여 실적
	5-③. 품종보호권 등록(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종자원에 식물신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의 수
	5-④. 직무발명제도 보상 우수인증기업(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등록받을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법인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도를 도입한 우수 인증 기업의 수(연간)

붙임2 과제별 목록

구분	과제명	주관부처	'22	'23	'24	'25	'26
전략 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추진과제 1.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창출							
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술 도출						
	① 특허빅데이터 기반 정부R&D 과제 발굴·연계 강화	특허청					
	② 산업·특허 동향분석을 통한 심사역량 고도화	특허청					
②	IP 분석 기반의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① 특허 기반 R&D(IP-R&D) 전략 지원 확대	특허청					
	② 연구개발 소주기 IP 전략 지원	특허청					
③	핵심 IP 창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강화						
	① 특허빅데이터 기반 정부R&D 과제 발굴·연계 강화	특허청					
	②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	특허청					
	③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분류 및 관리체계 구축	특허청					
	④ 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신규사업)	특허청					
	⑤ 산업데이터플랫폼 구축·확대	산업부					
④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R&D-표준-특허 연계						
	① R&D-표준-특허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창출지원	특허청					
	② 기업의 국제표준화 역량 및 R&D-표준 연계 강화	산업부					
추진과제 2. IP 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공공 IP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확대						
	① 거래 관련 공공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거래시스템 마련	특허청					
	② 맞춤형 컨설팅 기반의 민간 중개기관 육성	특허청					
	③ 중소기업 중심의 상향식 기술수요 발굴체계 구축	중기부					
	④ R&D 재발견프로젝트	산업부					
	⑤ 수요기반 IP 이전 및 후속 지원 강화	과기부					
	⑥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산업부					
	⑦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투자비중 확대 및 투자효율성 제고	특허청					
②	IP 서비스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신성장서비스 시장 확대 지원						
	①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산업부					
	② IP 서비스 기업 성장 및 고도화 지원	과기부					
	③ 수요자 중심의 기술이전 전·후 단계 기술컨설팅 강화	과기부					
	④ IP 확보 필요성이 높은 신성장서비스 및 제품·서비스 융합 중점 지원	산업부					

구분	과제명	주관부처	'22	'23	'24	'25	'26
추진과제 3.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제도 정비							
①	메타버스·AI 등 신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①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상표권 보호	특허청					
	②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보호	특허청					
	③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창작 및 IP 이용 활성화	문체부					
	④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문체부					
②	산업재산 정보 및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 기반 마련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정안)	특허청					
	② 연구데이터 권리화와 활용촉진에 대한 제도 검토	지재위					
③	융·복합기술 심사 서비스 체계 구축						
	① 융복합 및 신산업 관련 기술의 고품질 특허 확보 지원	특허청					
	② AI 기술을 적용한 심사시스템 지능화	특허청					
	③ 융·복합디자인심사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인프라 개선	특허청					
전략 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추진과제 1. 국가핵심기술의 전략적 IP 보호 강화							
①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수사 강화						
	①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범 엄정 수사 및 수사역량 강화	법무부					
	②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및 인력 등 인프라 강화	특허청					
	③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 및 공조수사체제 강화	법무부					
②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방지 제도 강화						
	① 영업비밀·아이디어 보호 강화	특허청					
③	핵심기술 보유 기관·기업의 IP 보호 역량 강화						
	① 해외 기술이전 협의시 필요한 'IP 가이드(체크리스트)' 마련	지재위					
	②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	산업부					
	③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산업부					
추진과제 2. 국내·외 IP 침해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							
①	국내에서의 IP 침해 방지 강화						
	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국경조치 강화	관세청					
	②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위조상품 차단 연구 추진	지재위					
②	해외에서의 IP 침해·분쟁 대응 및 제도 강화						
	① 현지 지식재산분쟁대응 지원	특허청					
	②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국경조치 강화	관세청					
	③ 해외지재권 보호기반 강화(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	외무부					
③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력 강화						

구분	과제명	주관부처	'22	'23	'24	'25	'26
	① 국제특허분쟁 대응 경쟁력 강화	특허청					
④	대·중소기업간 IP 공정거래 촉진						
	①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②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공정위					
추진과제 3. IP 분쟁해결 체계 고도화							
①	IP 침해 분쟁에서의 권리자 구제 제도 강화						
	① 증거수집제도 개선 및 지재권 소송 관할집중	특허청					
	② 충실한 사실심리 강화 방안 마련	특허청					
②	IP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① 저작권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문체부					
전략 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과제 1. IP 기반 혁신형 창업 촉진							
①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유도하기 위한 IP 기반 창업 지원						
	① 실험실 창업 지원을 통한 IP 기반 창업 저변 확대	과기부					
	② 우수 아이디어 보유자의 IP 기반 창업 역량 강화	특허청					
	③ IP기반 보건창업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복지부					
②	IP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IP 교육 및 컨설팅 강화						
	① 창업기업 지식재산 전문성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	중기부					
	② 창업기업의 IP 경영역량 강화	특허청					
추진과제 2. 중소·벤처기업의 IP 금융지원 확대							
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확대						
	①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IP기반 투융자 확대	특허청					
	② 산업기술정책펀드	산업부					
②	IP 투·융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①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조성	특허청					
	② 기술금융지원사업	산업부					
	③ 중소기업 특화된 특허정보 콘텐츠 제공	중기부					
	④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조성	특허청					
추진과제 3. 중소·벤처기업의 IP기반 글로벌 진출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IP 확보 지원						
	①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 지원	특허청					
	②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기업의 IP 분쟁 예방	중기부					
②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간 IP심사 협력 및 제도 조화						
	① 국가 간 지식재산협력 강화	특허청					

구분	과제명	주관부처	'22	'23	'24	'25	'26
전략 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추진과제 1. 차세대·고품질 K-콘텐츠 창출·활용 지원							
①	K-콘텐츠 제작 지원 및 콘텐츠 IP 활용 확대						
	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공급 강화	문체부					
	② AI 기술을 활용·연계한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문체부					
	③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및 한류 콘텐츠 체험기회 확대	문체부					
	④ 장르별 분야별 메타버스 콘텐츠 조성	문체부					
②	해외진출 한류 기업의 맞춤형 지원 강화						
	① 신한류 확산을 위한 지원 (및 보호 기반 정비)	문체부					
	② 비대면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조성	문체부					
	③ 한류 콘텐츠 홍보마케팅 및 재제작 지원	과기부, 문체부					
	④ OTT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문체부					
③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						
	① 확대 이용허락 제도 도입	문체부					
	② 데이터마이닝 저작권 저작권 제한	문체부					
④	1인 창작자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① 1인 미디어컴플렉스 조성·확대	과기부					
	②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	문체부					
추진과제 2. K-콘텐츠 보호 체계 강화							
①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①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인터폴 협업사업	문체부					
	②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문체부					
	③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문체부					
②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불공정 거래 개선						
	①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 TF 구성·제도개선안 마련	문체부					
	② 2차적 저작권 양도 강요 등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③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운영 지원	문체부					
	④ 방송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방통위					
추진과제 3. K-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저작권법)·제도 개선						
	①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문체부					
	② 창작자 표시의무 신설	문체부					
	③ 창작자 보호를 위한 처벌 수위 약화	문체부					
②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①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을 위한 공공 기반 구축	문체부					

구분	과제명	주관부처	'22	'23	'24	'25	'26
	② 권리자 불명 저작물 수집·제공 확대	문체부					
	③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의 발굴 및 원스톱 개방	문체부					
	④ 저작물이용허락표시제도(CCL) 활용 확대	문체부					
③	OTT 기반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① 디지털미디어콘텐츠펀드 운용	과기부					
	② 드라마펀드 조성 운영	문체부					
	③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문체부, 과기부					
	④ OTT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문체부, 과기부					

전략 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추진과제 1. IP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①	IP 인력 수급 조사·분석 체계화 및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①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지재위					
②	창의·융합 IP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고 대상 IP 교육 제공						
	① 발명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양성 기반 구축	특허청					
	②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문체부					
③	대학생 대상 IP 수요에 특화된 전문인력 집중 육성						
	① 新IP수요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 집중 육성	특허청					
	②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③ 저작권 전문역량 강화	문체부					
④	국제표준 전문가, 여성 등 IP 전문인력 양성						
	①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강화 및 글로벌 표준 전문인력 양성	과기부					
	② 산업체 중심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추진	특허청					
	③ 여성발명진흥	특허청					

추진과제 2. 글로벌 IP 협력 이슈 대응

①	IP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정채 공조 강화						
	① 국가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특허청					
	② 글로벌 IP 이슈에 선제적 대응	특허청					
	③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 내 지재권 이슈 적극 대응	외교부					
②	IP와 연계한 국제 통상전략 수립 강화						
	① IP연계 통상전략 수립	특허청					
③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마련						
	①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마련	지재위, 문체부, 특허청, 통일부					

추진과제 3. 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①	산림 유망자원 확보 및 품질 관리						
	① 국가 산림생물다양성 조사·분류 및 정보화 강화	산림청					

구분	과제명	주관부처	'22	'23	'24	'25	'26
	② 산림유망자원 이용활성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	산림청					
	③ 품종보호권 실시 확대를 위한 산업화 지원 강화	산림청					
②	야생생물 조사·발굴 및 생물자원의 확보 강화						
	① 자생생물 조사·발굴	환경부					
	② 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및 체계 확립	환경부					
③	해양수산자원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데이터센터 구축						
	①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R&D)	해수부					
	② 해양수산바이오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R&D)	해수부					
추진과제 4. IP 가치 확산 및 지역 IP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①	정당한 IP 보상 문화 정착 및 가치 확산						
	①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을 통한 직무발명 제도 확산	특허청					
②	대국민 IP 정책 소통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① 대국민 IP 정책 소통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지재위					
③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IP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① 지역특화산업육성	중기부					
	②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특허청					
	③ 지식재산 창출지원(RIPC IP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특허청					

법령명	기본계획 주요내용	법안현황
<p>상표법 (특허청)</p>	<p>(1-3-㉑) 메타버스 내 상거래질서 확립 및 상표 보호를 위해 디지털 상표 사용* 및 침해 행위** 관련 상표법 개정 등 법제화 추진</p> <p>* 디지털 상표사용 포괄정의 규정 도입, ** 혼동 가능성이 높은 상품 사용행위까지 보호범위로 확대 등</p>	<p>향후 추진</p>
<p>디자인보호법 (특허청)</p>	<p>(1-3-㉑)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물품을 디자인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유통 등 행위시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디지털 디자인 보호</p>	<p>향후 추진</p>
<p>저작권법 (문체부)</p>	<p>(1-3-㉑)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 동향·추이를 고려하여 저작권법 개정 또는 관련 특별법 제정 논의</p> <p>(4-1-㉓) 저작권 산업의 활성화 및 콘텐츠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 검토</p> <p>* 특정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 단체가 신탁 및 비신탁 저작물을 모두 포괄적으로 이용허락 (확대이용허락) 하는 제도</p> <p>(4-1-㉔) 데이터마이닝 저작권 제한과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p> <p>*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데이터마이닝 관련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신설</p> <p>(4-3-㉑)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 권익보호를 위한 '창작자 표시 의무' 신설</p> <p>*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유지하되, 실제 창작에 기여한 자(직원 등)의 성명 등을 표시할 의무 부여</p> <p>(4-3-㉑) 창작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한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 추진</p> <p>*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가와 발생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시, 양수인에게 보상(수익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p> <p>(4-3-㉑)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창작자 보호를 위해 처벌 수위 약화</p> <p>*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 콘텐츠 창작시, 저작권 침해 우려로 인한 창작자 위축을 막기 위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예외</p>	<p>제정 발의 (21.1)</p>

법령명	기본계획 주요내용	법안현황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	<p>(2-1-㉔) 침해자에게 침해수익이 남지 않도록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하되, 몰수 불가시 그 가치에 상당한 금액 추징</p> <p>(2-1-㉕) 아이디어 직접 탈취는 물론, 탈취를 알고도 제공받아 사용한 간접탈취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제재</p>	향후 추진
특허법 (특허청)	<p>(1-3-㉑) AI를 이용한 진단방법 등 신기술과 결합한 의료 기술(방법) 발명의 특허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p> <p>(2-3-㉑) 당사자계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개최* 하도록 단계별 확대 및 관련법 개정 추진</p> <p>* 제154조(심리 등) ②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 심리를 하여야 한다.</p>	향후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영화비디오법 (과기정통부/문체부)	<p>(4-3-㉓) OTT 콘텐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p>	국회 계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특허청)	<p>(1-3-㉔) 산업재산 정보*의 국가적 수집·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p> <p>* 산업재산(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창출·보호·활용 과정에서 수집·생성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모든 종류의 지식·자료</p> <p>** 주요내용(안): 산업재산정보의 정의, 관리·활용 지원,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등</p>	제정 발의 (21.11)
발명교육법 (특허청)	<p>(5-1-㉔)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의 확산을 위해 지역별 발명교육 거점기관을 설치*하고, 초·중·고 발명교육센터를 통한 발명 소양교육 제공</p> <p>* 권역별 발명교육 총괄 지원 및 체험·심화교육 등을 담당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명교육법 개정('22)</p>	향후 추진